

2020년 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10. 15(목), 14:00 ~ 17: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봉렬, 김정희, 김창준, 윤균(오심), 이경미,
이정수, 이찬희, 임영애, 전봉희, 정명섭, 천득염
(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서울 동관왕묘 주변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개
2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화장실 신축	공개
3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 조성	공개
4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전 설치	공개
5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2차, 재심의)	공개
6	서울 숭례문 주변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 사업(변경허가)	공개
7	서울 숭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재심의)	공개

【검토사항】

8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봉상루 증·개축 설계 검토	공개
9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검토	공개
10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설계 검토	공개
1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	공개

【보고사항】 공개

1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 고령 장거리 암각화 주변 자원순환시설 신축 - 안동 개목사 원통전 주변 도로선형개량 공사(변경허가) -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청도 석빙고 주변 석빙고, 청도읍성 주변 정비사업 실시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탄금호 일원 상징조형물(포토존) 제작 설치(2차)	공개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정법궁 철거 후 대응 보전 건립(변경허가) -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양성화 -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재심의) -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 농막(1동) 설치(2차) - 사천 홍사리 매향비 주변 양봉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 |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0-001

1. 서울 동관왕묘 주변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주변에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38-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2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9.7m
 - 사업내용 : 외부진입로 설치 및 건물 용도변경 1식
 - 건축면적 : 394.63㎡(변경없음)
 - 연면적 : 1,106.48㎡(변경없음)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변경없음)
 - 최고높이 : 7.7m(변경없음)

※ 변경사항

1) 공중화장실 진입로 설치 1식(외부경관 변경)

2) 지상1층 용도변경

기존 : 노유자시설 357.75m²

변경 : 노유자시설 305.03m², 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52.72m²

□ 서울 동관왕묘 보수사업 추진현황

○ 총사업비 : 3,626백만원

(15년 428백만원, 16년 520 백만원, 17년 749백만원, 18년 509백만원,
19년 1,164백만원, 20년 256백만원)

○ 추진현황

- 재실 복원 및 주변정비 완료 : '16.11월
- 지반 절토 및 건물 기단 보수 완료 : '17.12월
- 화계 및 배수로 정비, 연지복원 완료 : '19.6월
- 정전내부 현관(2기) 해체 수리, 토상 1기 보존처리, 감실 및 정전 내부 세척 완료 : '19.11월
- 내부 담장 복원 , 감실 보수 등 완료 : '20.8월
- 내부지반 복원, 정전·동무·서무 건물 보수, 어막대 주변 정비 완료 : '20.7월

○ 향후계획

- 외삼문 및 외곽담장 보수 공사 : '20.12월 완료 예정
- 어막대 복원 관련 화장실 철거를 위해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 : '21년 추진
- 화장실 철거 및 어막대 복원 : '21년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램프 수목 제거, 난간재, 동선 고려 문위치 조정 등 참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조건부가결 1명

2.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장성군 소재 보물 제1346호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대웅전
 - 지 정 일 : 2002. 09. 2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70m
 - 총사업비 : 7억원(도비 4.1억, 군비 2.9억)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1식

구분	기존 건물(철거)	금차
건축면적	- 지상1층 : 67.1㎡	지하1층 : 97.2㎡ 지상1층 : 97.2㎡

구분	기존 건물(철거)	금차
평 면	“一”자형 평면	“ㄱ”자형 평면
주 칸	정면2칸 측면2칸	정면5칸 측면3칸
양 식	민도리집	민도리집
구 조	3량가구 - 지상1층 : 콘크리트구조	5량가구 지하1층 :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 한식목구조
지 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기 단	자연석기단	화강석기단

라. 의결사항

- 보류
 - 위치·형태 등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1명

3.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주변에 종교집회 시설 부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종교집회시설 부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여주 창리 삼층석탑
 - 소 재 지 : 경기 여주시 상동 132번지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상동 65-18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8m
 - 사업내용 : 종교집회시설 부지(농구장, 주차장 등) 조성
 - 자연석쌓기(H=2.0미만) : 50m(흙쌓기 : 86㎡)
 - 돌쌓기(H=3.0m) : 18m
 - 흙관 매설(D300mm) : 50m
 - 집수정(600*600) 2개소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 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4.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전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광주시 소재 국보 제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이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를 이전 전사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립광주박물관 내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 소재지 :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위치 :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3 국립광주박물관
 - 내용 : 박물관 내 문화재 이전(1층 로비 → 2층 역사문화실)

<이전절차>

- 1) 1차 3D스캔 : 광대역 스캔(현황기록 및 기울기 측정)
- 2) 해체 및 운반 : 크레인으로 부재별 해체, 포장 및 안전한 운반
- 3) 임시 격납 : 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격납
- 4) 2차 3D스캔 : 부재의 노출면, 상부, 측면 등 정밀 스캔
- 5) 면진대 설치 : 이전될 장소 면진대 제작 및 설치
- 6) 석등 이전 설치 : 3D 스캔자료를 활용하여 2층 역사문화실 내 재설치

라. 의결사항

- 부결
 - 상징성 고려, 해체 이전 우려됨.(박물관 측 이전 타당성 및 대책 제시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 11명

5.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2차, 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보물 제119호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5.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층수 높아 위압적임)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9.17.) : 보류
 - 현지조사, 허가사례 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48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상주시 서성동 121-1번지 외 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20m

○ 사업내용 :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구분	‘20.05.21. (부결)	금 차	비고
대지면적	2,508m ²	좌동	-
건축면적	1,520.902m ²	좌동	-
연면적	22,721.7993m ²	22,049.6101m ²	감 672.1892m ²
세대수	138세대	132세대	
층수/ 최고높이	지하2층, 지상27층 / 91.8m	지하2층, 지상26층 / 81.2m	감 1층/ 감 10.6m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 경관심의 전(접수 시)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49m²
- 건축(연)면적 : 1,260.51m²(26,519.21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수 : 지하2층, 지상35층
- 높이 : 110.4m

=> ‘20년 1월 2차 자체회의 결과 보류 : 자료보완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 경관 심의 결과 및 자료 제출
- 신청사업과 문화재와의 관계자료(주변 현황 등) 제출

※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주변과의 부조화 및 입주민의 조망권 저해 보완
- 상가외부 전면유리 설치에 따른 간판설치계획 보완
-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 재검토(그라데이션 등)

라. 현지조사의견(2020.10.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지조사 결과, 상주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신청건물 정도 높이의 건물이 없는 상황임
- 다만, 당해문화재가 공원으로 이전된 상황이고 공원과 보호각 전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위치임
- 당해문화재에 대한 제한은 배후 스카이라인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제한이 유일하나, 현 상황에서는 능선과 수림대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므로 신청건물에 대한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부결10명, 기권 1명

6. 서울 숭례문 주변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 사업(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주변 세종대로 보행 친화공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보행 친화공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분과위원회 심의결과(2020.06.18.) : 조건부가결
- 숭례문 외곽 울타리는 1.2m 내외의 숭례문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이 되도록 함
- 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와 지속 협의할 것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숭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세종대로사거리 ~ 서울역(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외)
 - 총사업비 : 242.8억원

- 사업내용 :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 사업

기 허가사항('20.06.18.)	금회 신청 사항
○ 세종대로(세종대로사거리~서울역)구간 (1.5km)에 대하여 보행로 폭 확장, 자전거 도로 신설, 포장·조경·기타 시설물 설치 등 ※ 허가조건 - 승레문 외곽 울타리는 1.2m 내외의 승레문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이 되도록 함 - 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와 지속 협의 할 것	○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3구역 내 수목 추가 식재 - 보호구역 내 : 은행나무 4주 - 허용기준 3구역 내 · 소나무 46주, 느티나무 27주, 배롱나무 5주 · 산수유 6주, 산딸나무 3주 ※ 허가조건에 대한 보완사항 ○ 승레문 주변 외곽 울타리 디자인 검토 - 기와(진회)색 계열 1.2m 높이 - 생울타리 높이 0.9~1.2m, 폭 1m 내외 ○ 추가 CCTV 4개소에 스피커 통합 - 통신 케이블 매설 위한 굴착 (0.6m×0.6m×6m) ○ 승레문 정문, 후문 자동문 설치

라. 자문의견(2020.07.29.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 ○○○)

- 펜스는 최소 120cm 높이의 세로살을 가진 현대적 디자인으로 하고,
- 펜스의 앞뒤에 생울타리는 90~120cm 높이, 폭 1m 내외로 식재하여,
- 전체적으로 펜스가 승레문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중성적 디자인으로 한다.
- 구간별로, 위의 기본 디자인에 더해 석재도 활용할 수 있으며, 구간별 특성에 맞추어 규격의 조정도 가능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은행나무, 산딸나무 등 식재 수종 고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조건부가결 1명

7. 서울 숭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재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보 「서울 숭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0.09.17) : 보류

- 현지조사 필요
- 주변 건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정안 제시

다. 주요내용

(1) 조정대상 : 서울 숭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 지정일 : 1962. 12. 20.

(2) 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표
1	국보	1	서울 숭례문	허용기준 변경(2구역→3구역)	변경없음

(3) 향후계획 :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라. 참고사항(관계전문가 의견 <2020.09.15. / 문화재위원 ○○○>)

- 숭례문 주변 허용기준 2구역 내 위치한 남대문 상가 중 대형빌딩(롯데손해보험) 동측에 위치한 상가는 숭례문의 조망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숭례문 맞은편, 남대문 상가 출입부는 숭례문에서 직접적인 조망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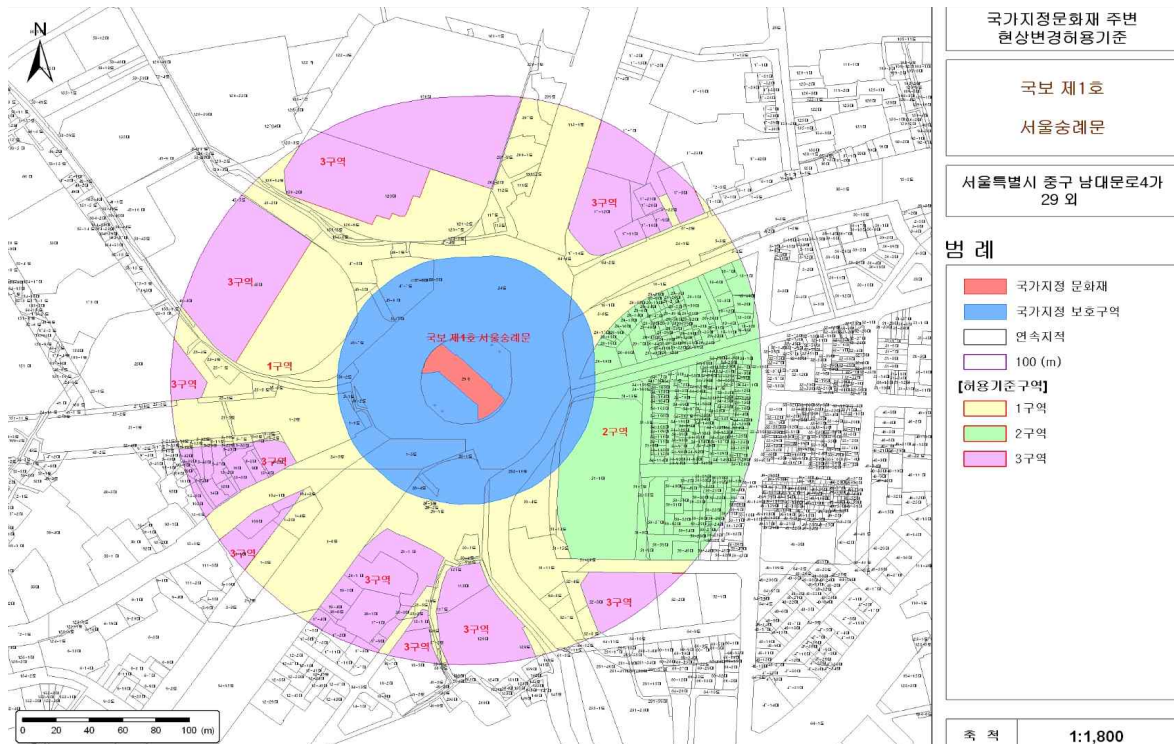
- 조건부가결
 - 2안에서 숭례문 북동지역(남대문로 12-2) 소로까지 2구역으로 포함하도록 구획 가능 부분 확인 조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붙임] 허용기준 조정 전·후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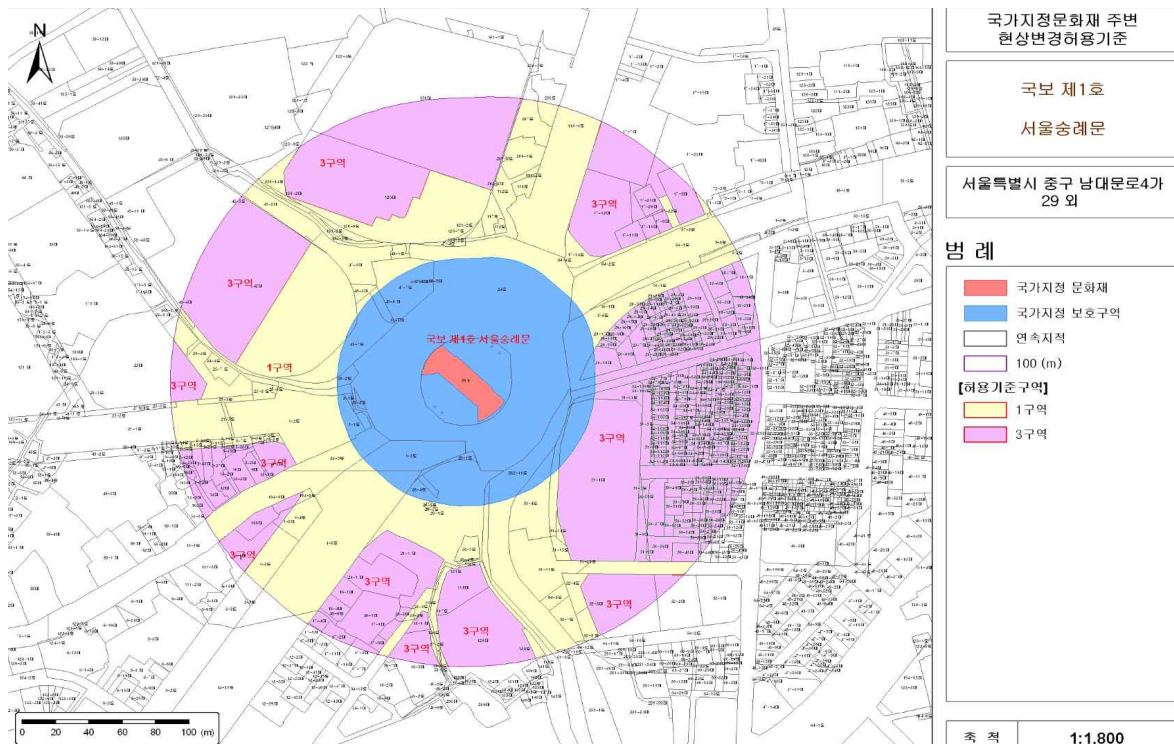
[붙임]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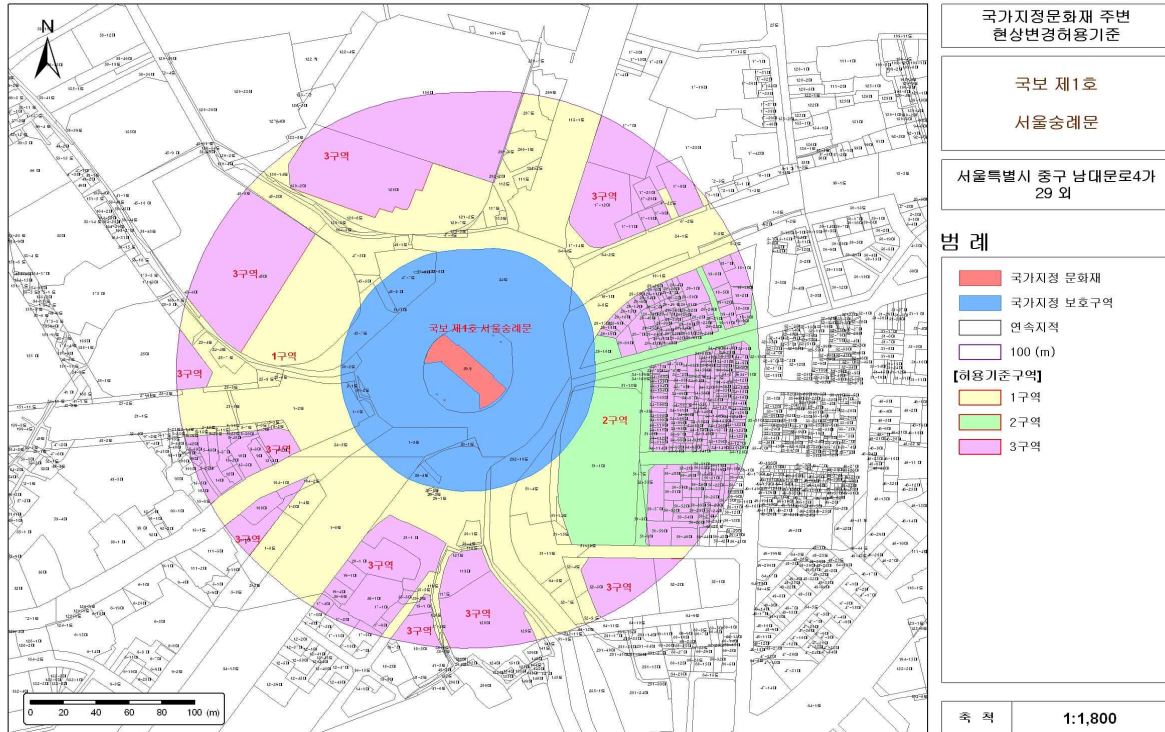
【 당 초 】



【 변경 1안 】



【 변경 2안 】



▣ 국보 제1호 “서울 송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변경없음)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0-10-008

8.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봉상루 증·개축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제1112호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봉상루 증·개축 설계 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봉상루 증·개축 설계 안과 관련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1번지 대원사
- 지정일 : 1992. 01. 15.

(2) 사업내용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봉상루 증·개축 설계를 실시한다.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국비 70,000천원, 지방비 30,000천원)
 - ※ '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전통지 : 대원사 봉상루 이권 1,200,000천원(국비 840,000천원, 지방비 360,000천원)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1번지 대원사

○ 세부내용

구분	기존	증·개축 안	비 고
규 모	정면3칸, 측면2칸	정면5칸, 측면2칸	
가구형식	1출목 3익공	1출목 3익공	
지붕형태	겹처마, 팔작지붕	겹처마, 팔작지붕	
평면형태	2층 누각	2층 누각	누하진입
면 적	42.91㎡(13.0평)	91.8㎡(27.7평)	
전체높이	9.47m	10.08m	
자연석 석축	69.2m(H=0.8~2.5m) 해체 80.6m(H=1.65~2.7m) 설치		
한식담장	18.4m(H=1.2m) 막돌담장 해체 36.0m(H=0.9m) 와편담장 신설		
자연석 계단	W=2.6m, 2개소 해체 W=3.3m, 2개소 신설		
수목 정비	수목이식 및 식재 30주 (전통수종으로 정비)		

라. 자문의견(2020.07.06.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봉상루 1층은 콘크리트 구조이고, 상층은 훼손이 심한 상황이므로 개축하여 정비하는 것이 좋겠음.
- 현재 봉상루의 위치는 대웅전과 가깝고 계단 등으로 인하여 마당이 협소하므로 급변 개축 시 사찰배치에 맞게 대웅전과 이격하여 위치를 조정함이 좋겠음.
- 현 봉상루의 규모는 대웅전과 사찰 규모에 비해 작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사찰 누각의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설정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누각 배면 석축을 뒤로 물리는 방안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9.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2020년도 보물 제738호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도 「보물 제738호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양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38번지, 통도사
 - 지 정 일 : 1982. 11.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609-11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역사문화환경구역으로부터 570m
 -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용 * 총사업비(추정) 110억

교부 연도	사업내용(지침)	교부예산		비 고
		국비	지방비	
2020년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보존환경에 적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적정 규모의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를 실시한다.	400백만원 28	12	국가검토 (유형문화재과 승인사항)

- 사업내용 : 양산 통도사 수장고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2,637.72m²(3,638.18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지상1층)
 - 건축양식 / 층고 : 자연지형을 반영한 랜드 스케이프 양식 / 9m
 - 참고사항 : 기존 불법건축물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조성
 - * 불법건축물 현황 : 된장판매소(137.72m²), 운영사무실(38.31m²)
- 건립 예정 수장고 문화재 이전 개요
 - 통도사 소장 문화재 현황
 - 지정문화재 : 80건 1,090점(국보 1건, 보물 26건, 시도지정 40건, 문화재 자료 13건)
 - 비지정문화재 : 지류문화재 28,982점 등 38,916점
 - 건립 예정 수장고 이전 문화재 : 불화, 목판류 등 1,470점

라. 전문가 자문의견

□ 문화재위원 ○○○ / 2020.09.18.

- 개방형 수장고 내에 작업공간이 필요하고, 수장 능력을 키우기 위한 랙의 설계가 필요하며, 외부방수를 위한 중공벽이 확보되어야 함
- 개구부는 북향이라도 관계없고 강제 환기 장치를 이용하므로 최소한의 환기만으로 가능함
- 로딩 테크 등 차량 동선에 대한 조정이 필요
- 기계, 전기실은 외부에서 접근이 쉽고, 장비의 교체가 편리하도록 배치
- 학예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 / 2020.09.23.

- 가람의 주불전 영역에서 가급적이면 이격된 위치에 자리하여야 할 것임
- 현대식 재료로 전통형식을 취하는 설계의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주변의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계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dry area의 폭과 깊이에 유의하여 지하공간이 습하지 않도록 할 것
- 수장고의 성격에 맞게 환경조절 장치에 만전을 기할 것

□ 문화재위원 ○○○ / 2020.09.24.

-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대지를 주변 경관과 서운암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주요 시설을 지하화한 형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장고의 특성상 습기를 비롯한 제반여건이 원활하게 시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반영을 철저히 할 것
- 현재 검토 중인 평면에서 유물의 반입이나 보존과학적 처리를 위한 이동 등이 원활하지 않을 구간이 보이므로 유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재검토하도록 함

□ 문화재위원 ○○○ / 2020.09.28.

- 복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내환경의 취약점인 환기불리, 결로 발생, 복토 부위의 유실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유물의 성격에 다른 보존, 전시 등의 면밀한 조사에 근거하여 공간계획을 하되, 보존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함(포쇄공간 필요한지 확인)
- 주출입문은 돌출시켜 내부 관람공간의 개방감을 높임
- 진입부와 전방데크의 난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주변 경관 감상을 유리하게 함
- 건물 외관 재료는 명채도가 낮은 제주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증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의 core나 buffer zone을 표기함
- 북향으로 인한 계절풍, 산사입지조건에 따른 바람길을 조사하여 반영함
- 관리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
- 복토 지하건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지상 건물로 계획을 반영한다면 기존 사찰의 건물들을 압도하지 않게 진입부 쪽에 차폐 및 경관의 식재를 군식으로 재식함을 고려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 소위원회 검토 자문 필요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보류 10명, 제척 1명

[참고] 주요 의견 분석

구분	주요 내용
위 치	■ 주불전 영역에서 가급적 이격된 위치(○○○ 위원)
경 관	■ 주변 경관과 서운암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주요 시설을 지하화한 형태는 바람직(○○○ 위원) ■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계획으로 하는 것이 타당(○○○ 위원)
규 모	■ 의견 없음
보존환경	■ 지하공간이 습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조절장치에 만전을 기할 것(○○○ 위원) ■ 수장고의 특성상 습기를 비롯한 제반여건이 원활하게 시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반영을 철저히 할 것(○○○ 위원) ■ 복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내환경의 취약점인 환기불리, 결로 발생, 복토 부위의 유실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위원)

10.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제185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공사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공사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무량로 203(외산면)
- 지정일 : 1963. 01. 21.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0m
- 사업예산 : 2020년 40백만원(국비 28백만원, 지방비 12백만원)
 - ※ 2021년 사전통지 예산 : 660백만원(국비 462백만원, 지방비 198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무량사 진입교량 개축 설계를 실시한다.
 - ※ 사업구분 : 지방검토
- 사업내용 : 진입교량 재설치
 - 교량 규모 : H=6.0m, B=5.0m, L=10.0m
 - 구조 : 라멘콘크리트 구조
 - 마감재 : 화강석 판석 붙임

- 토류벽(가시설공사) : H=6.0m, L=14.0m
- ‘가’석축(거친돌 허튼층 쌓기) : H=3.0~4.0m, L=21.0m
- ‘나’석축(거친돌 허튼층 쌓기) : H=2.5~4.0m, L=17.6m
- 석재보(거친돌 설치) : H=0.45~1.0m, B=0.6m, L=0.6~1.0m(전체길이 : 10.2m)
- 배수로 설치 : H=0.25m, B=0.35m, L=4.0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난간은 단순화하고, 구조·안전성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1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

가. 제안사항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등 38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완화)(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완화)(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449호, '17.12.18)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완화).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등 38건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국보	84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동사항 조정
국보	130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동사항 조정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공통사항 조정 등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 제2구역→제3구역(신설)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보존→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143	서산 개심사 대웅전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162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 제1구역 일부 해제	1구역(원지형 보존→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181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보물	188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189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4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97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 제1,2,3,4구역 일부 조정	1구역(신축불가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296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297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307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372	진주 용암사지 승탑	○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동사항 조정
보물	373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 제1구역→제4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보존 → 개별심의), 2·3구역(층수삭제), 4구역 신설, 공동사항 조정
보물	472	의령 보천사지 승탑	○ 제1, 2, 3구역 및 공동사항 허용기준 변경 ○ 제4구역 허용기준 신설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 제2구역과 제3구역 통합 및 완화	3구역 삭제, 공동사항 조정
보물	407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 신설, 공동사항 조정
보물	429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동사항 조정
보물	467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보존 → 개별심의), 2구역 신설, 공동사항 조정
보물	470	구미 도리사 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 신설, 공동사항 조정
보물	504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동사항 조정
보물	584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공동사항 조정 등
보물	655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2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동사항 조정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675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676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804	순천 정혜사 대웅전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831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832	영주 성혈사 나한전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907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2,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3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943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공통사항 조정
보물	945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보물	946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 제1구역→제2구역 일부 완화	2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보물	1115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5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4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293	공주 계룡산 중악단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5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3,4구역(층수삭제), 5구역 신설, 공통사항 조정

유형	지정 번호	문화재명	허용기준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1372	함평 고막천 석교	○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 제1구역→제3구역 일부 완화	1구역(원지형 보존 → 개별심의), 2구역(층수삭제), 공통사항 조정
보물	1942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 제3구역→제4구역 일부 완화	공통사항 조정 등

(3) 향후계획 : 허용기준 조정(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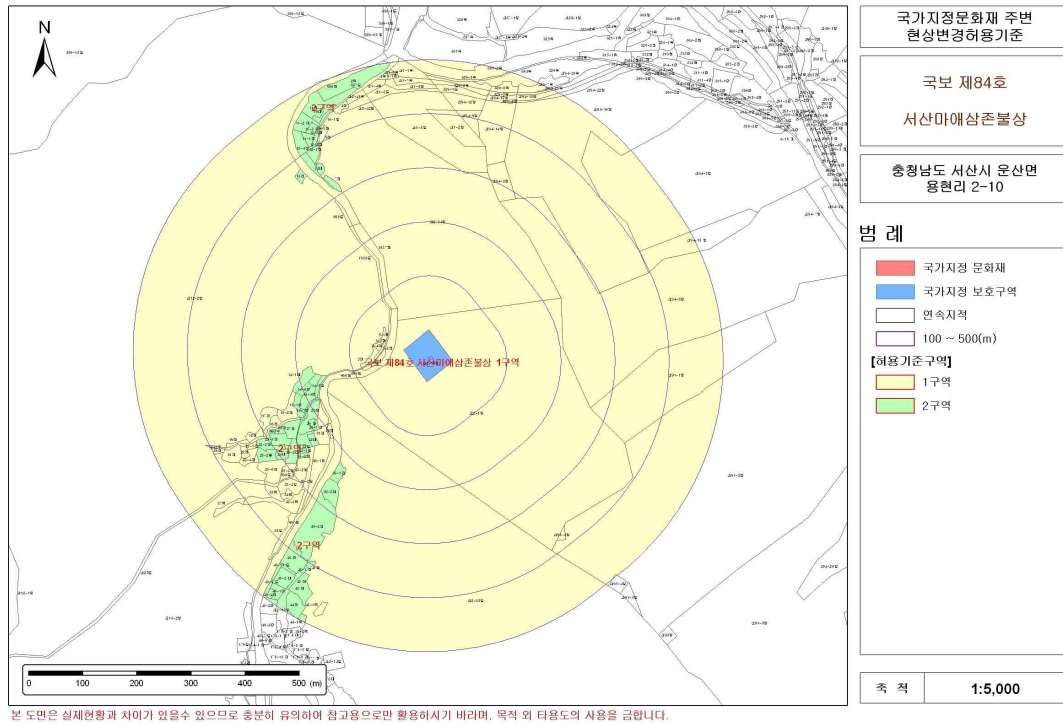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찰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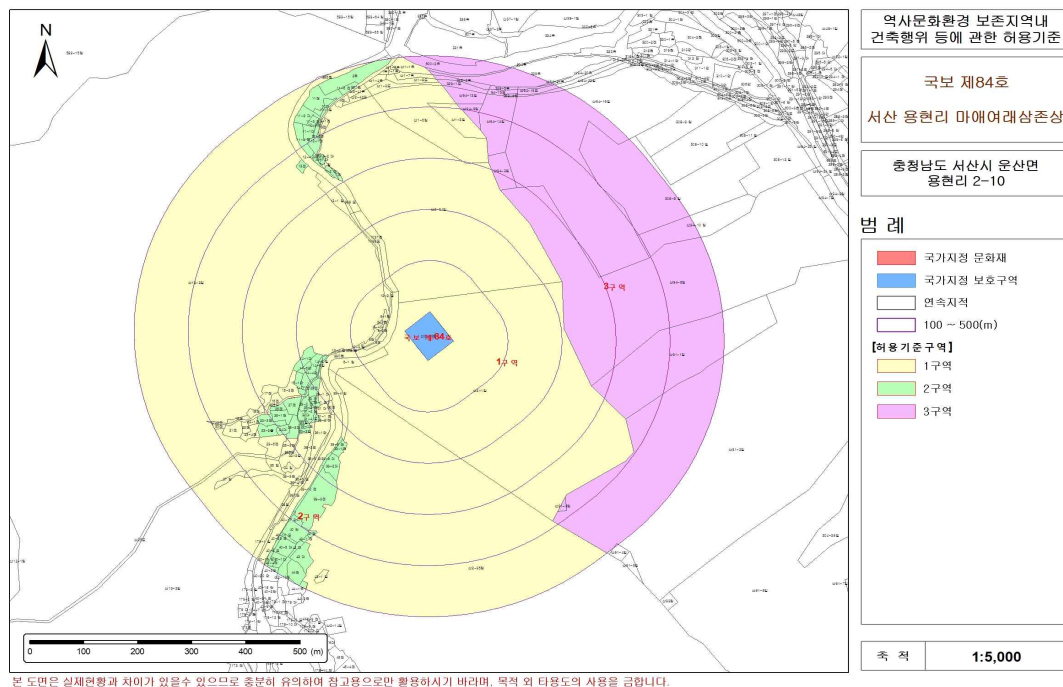
[붙임] 허용기준 조정 전·후 각 1부.

[붙임]

■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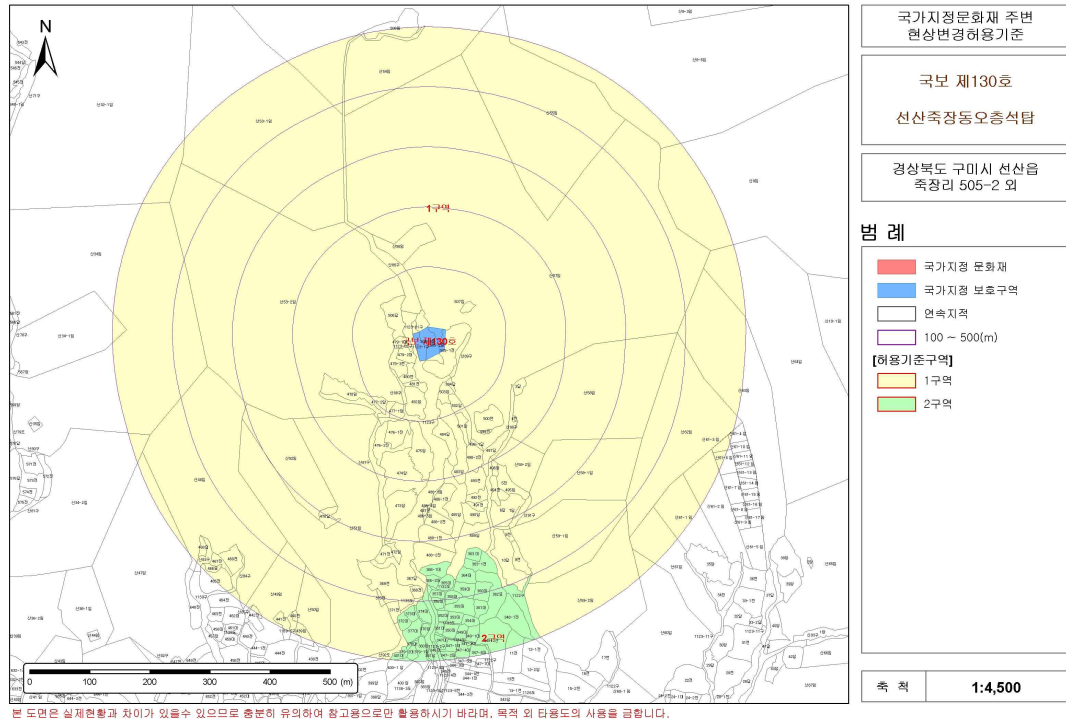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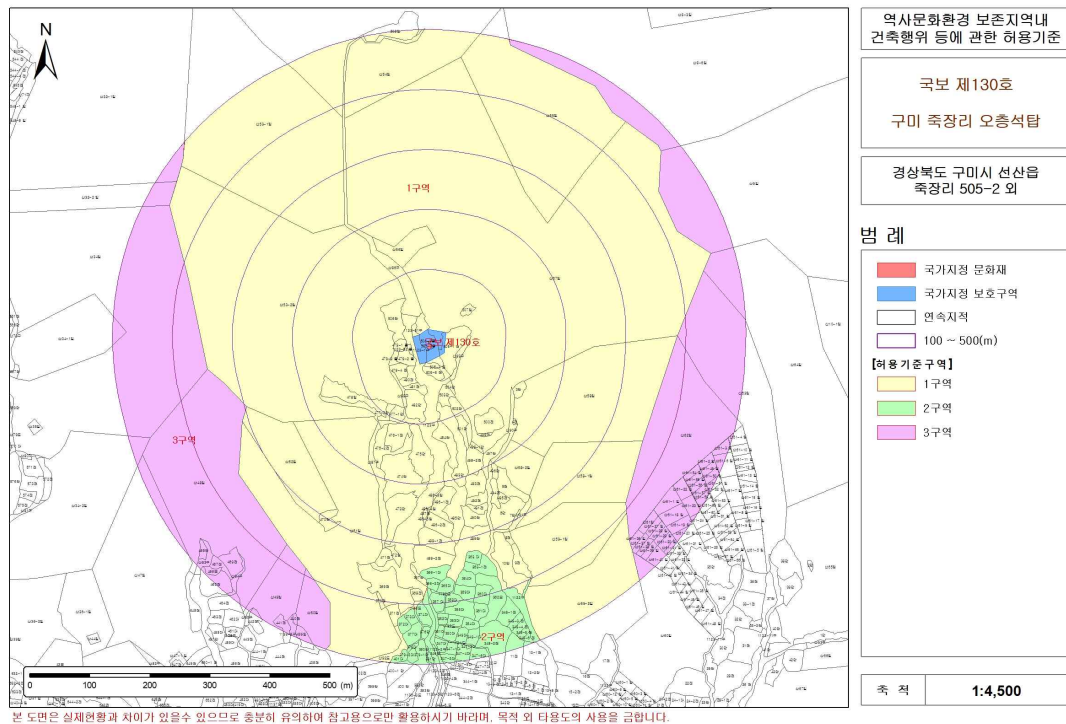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국보 제130호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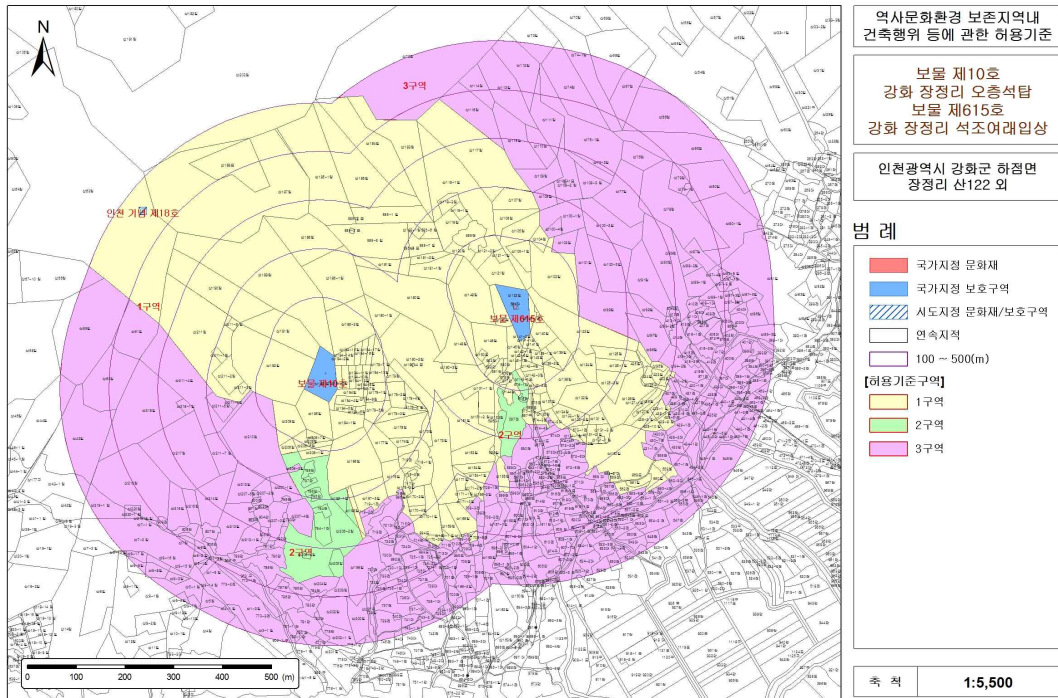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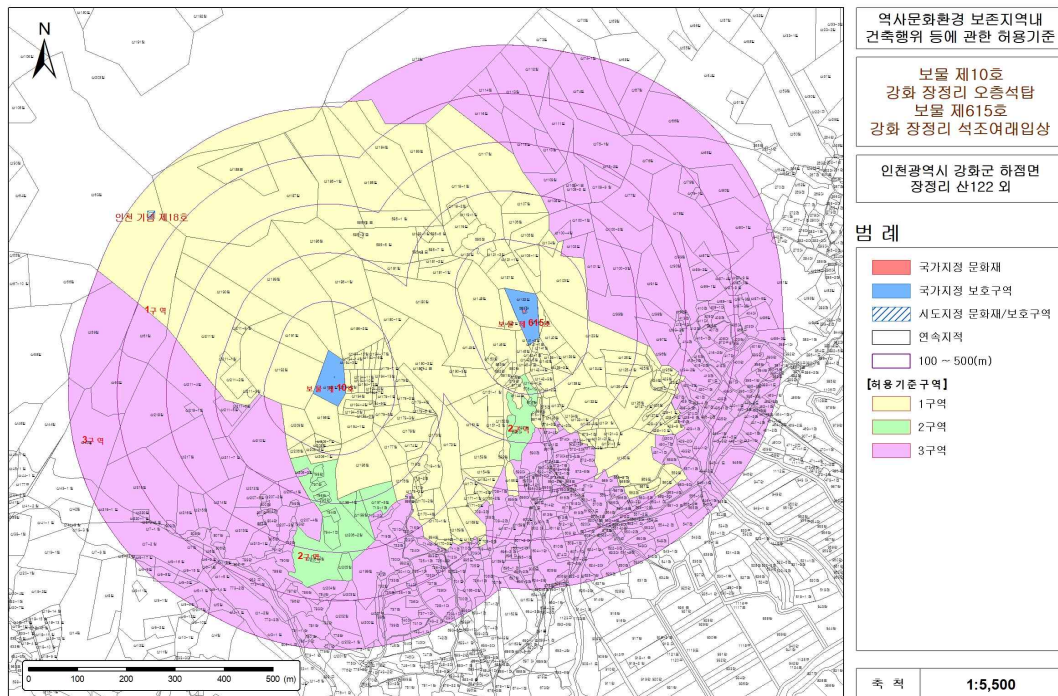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

【 변경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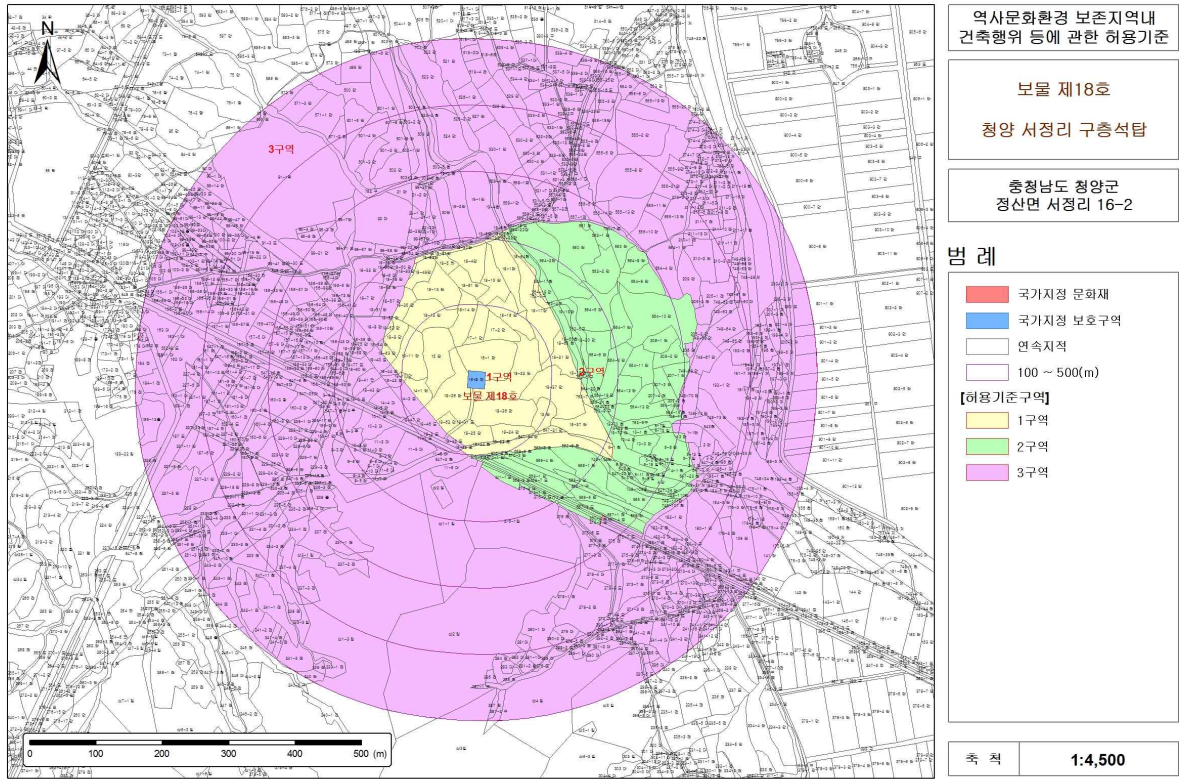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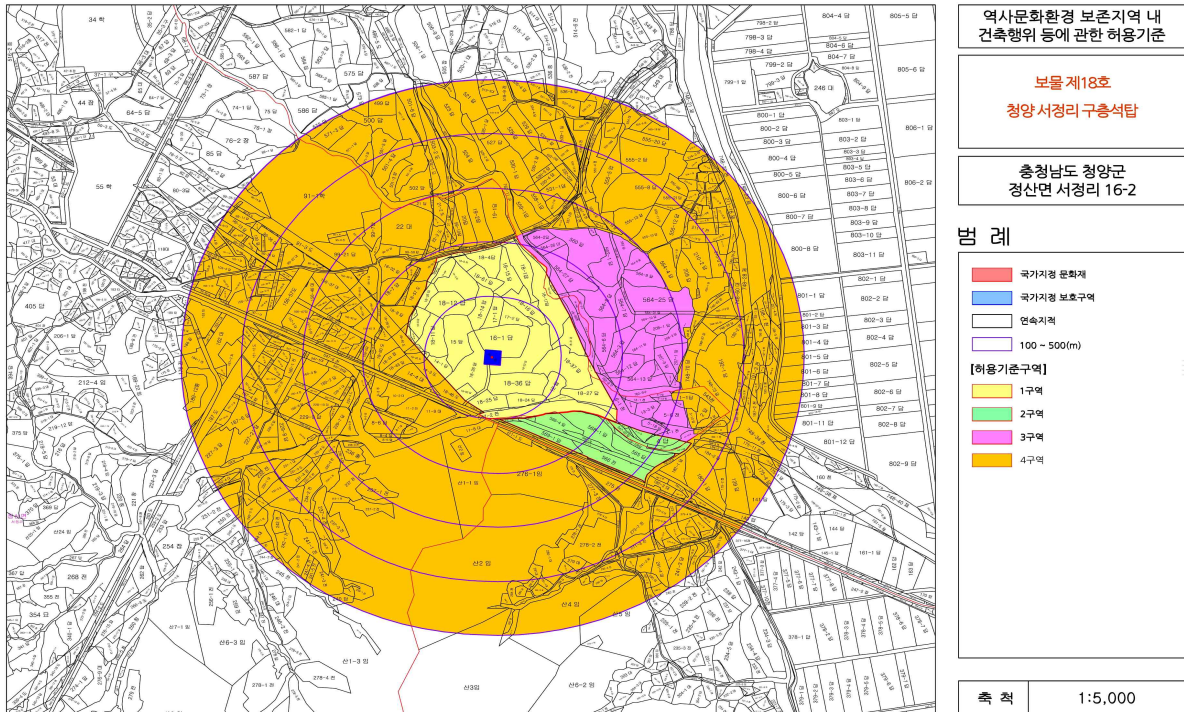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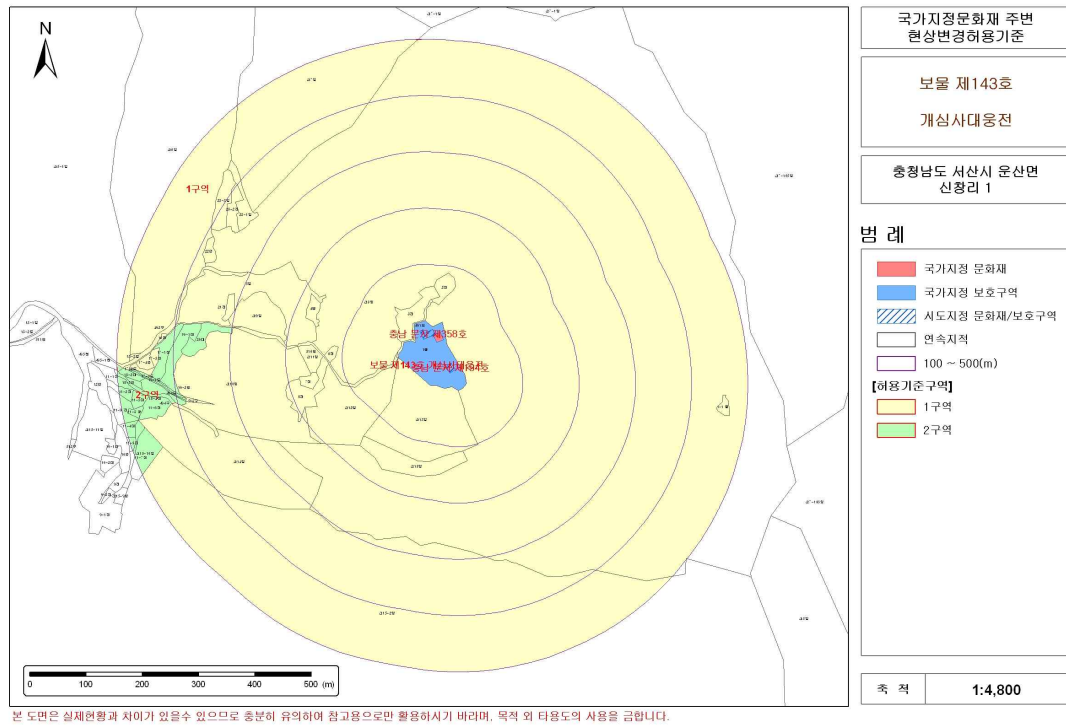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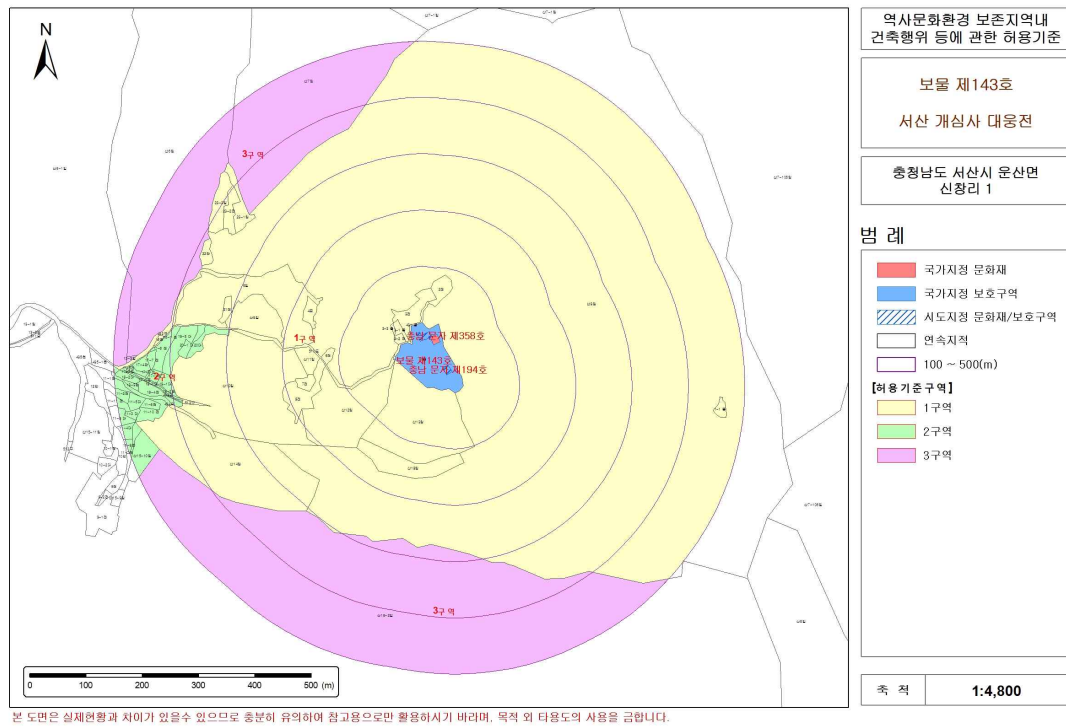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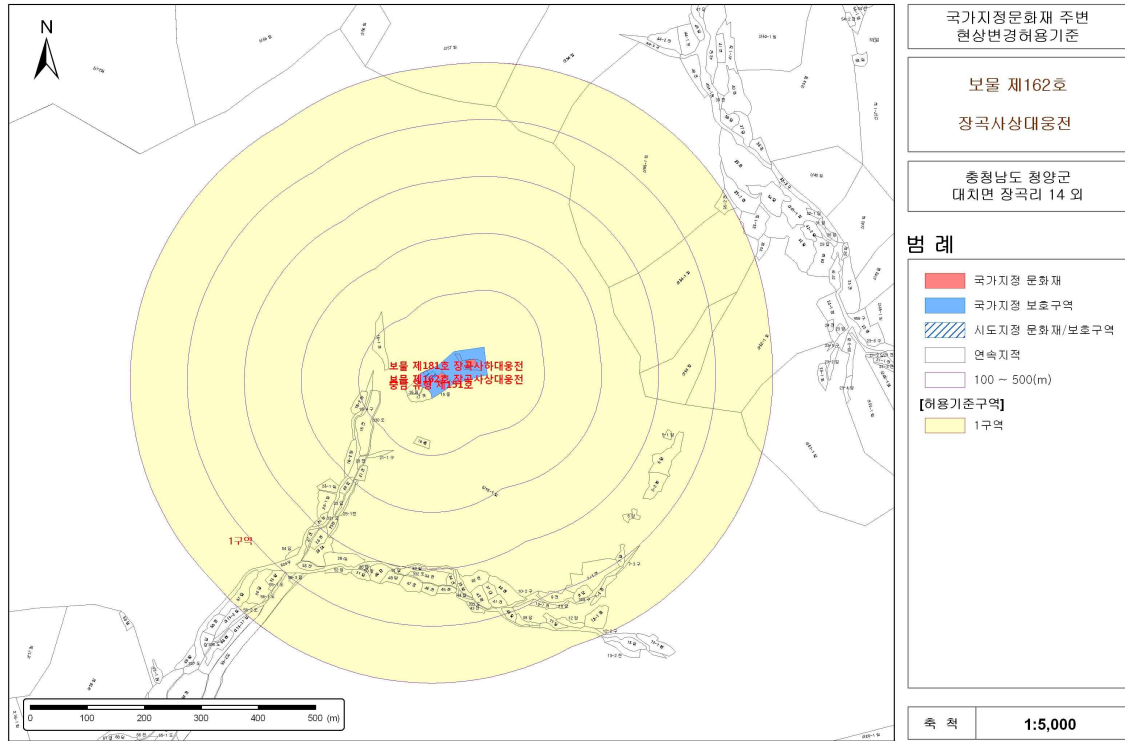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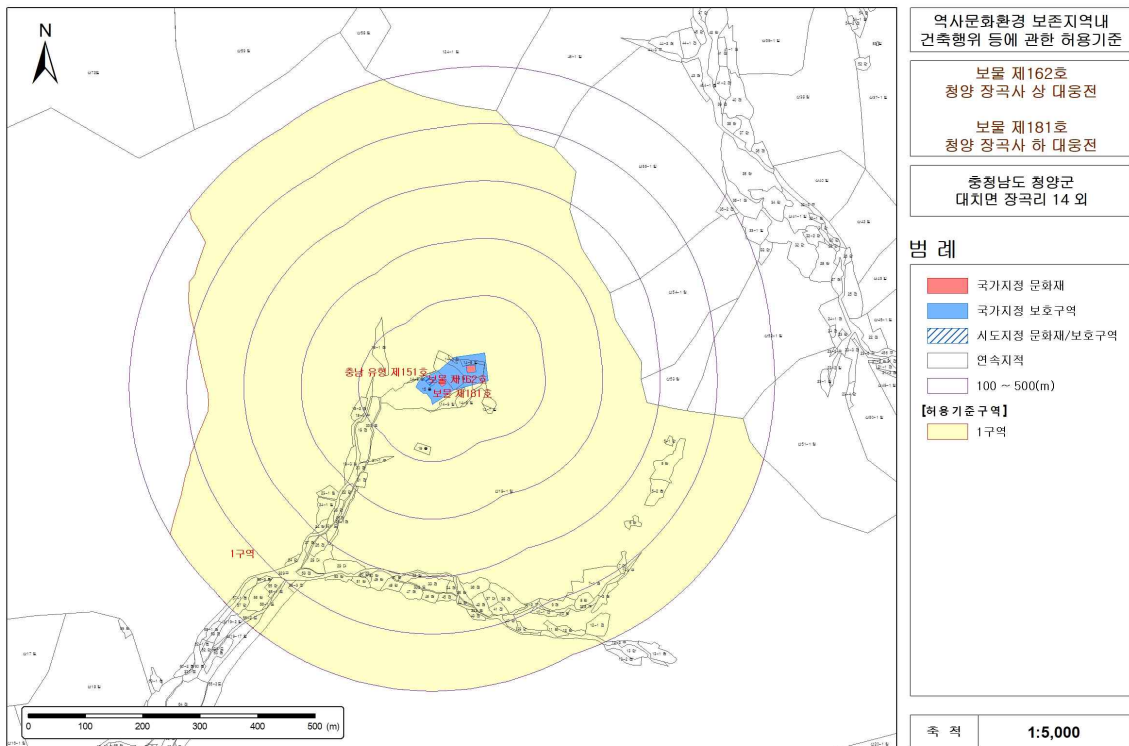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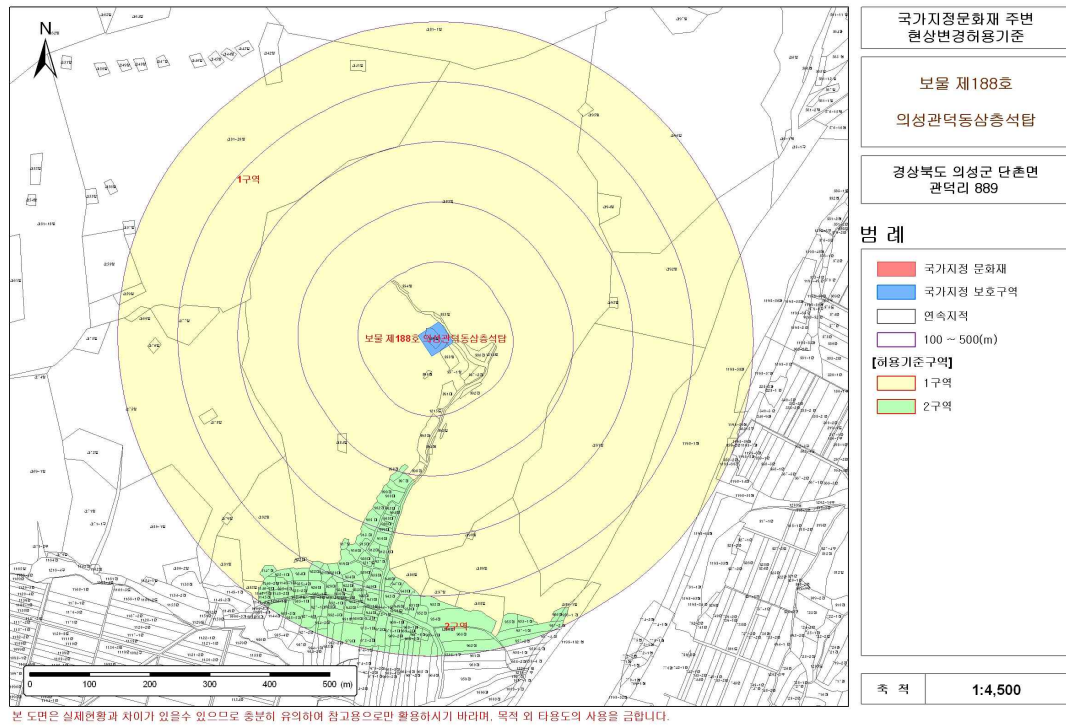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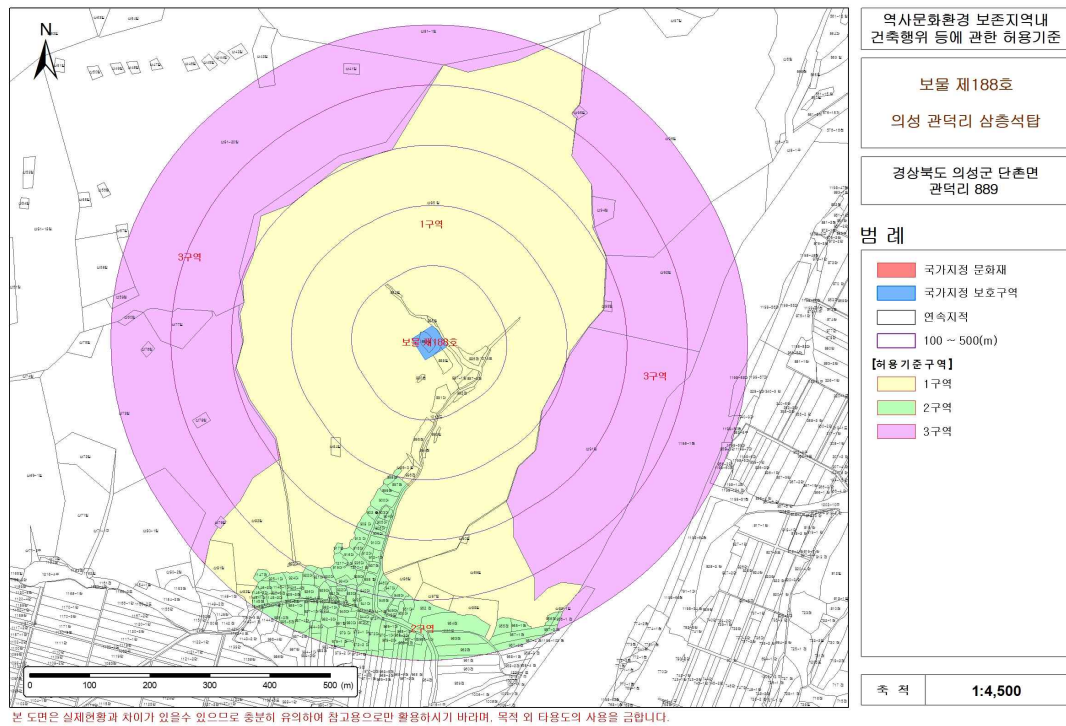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8호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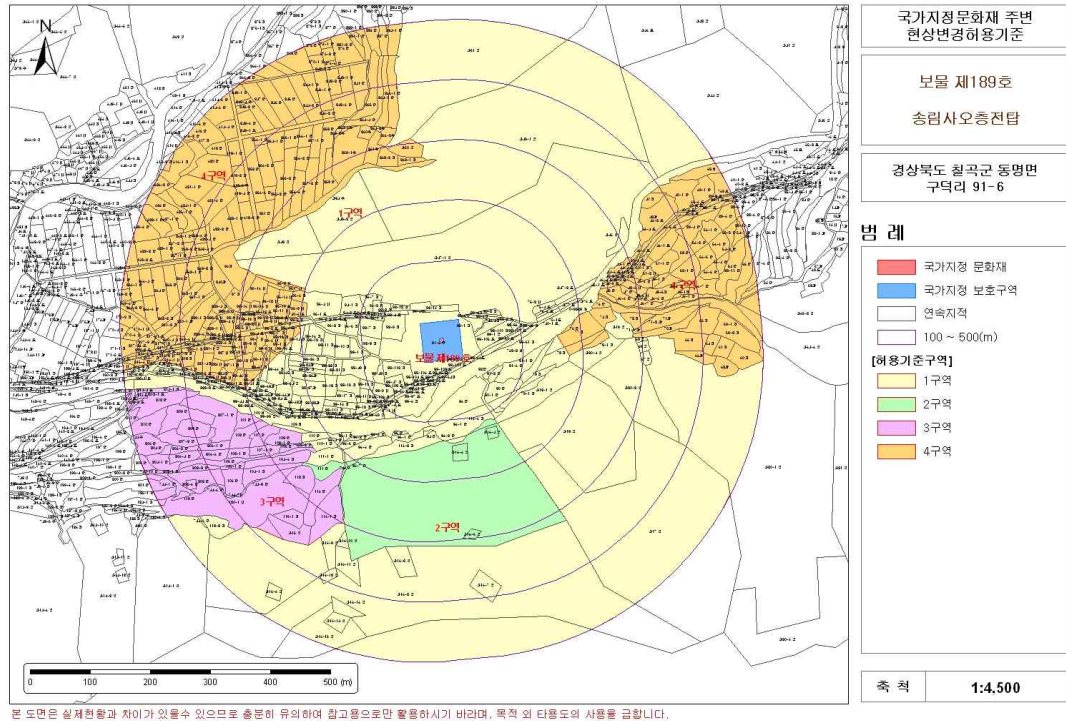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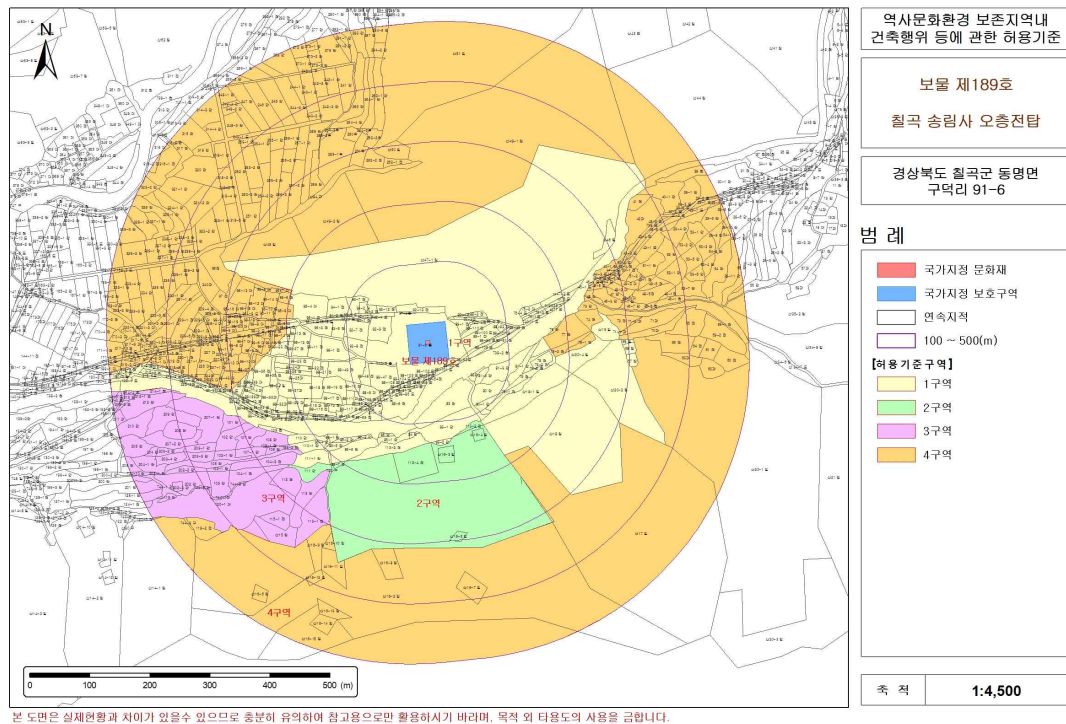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9호 “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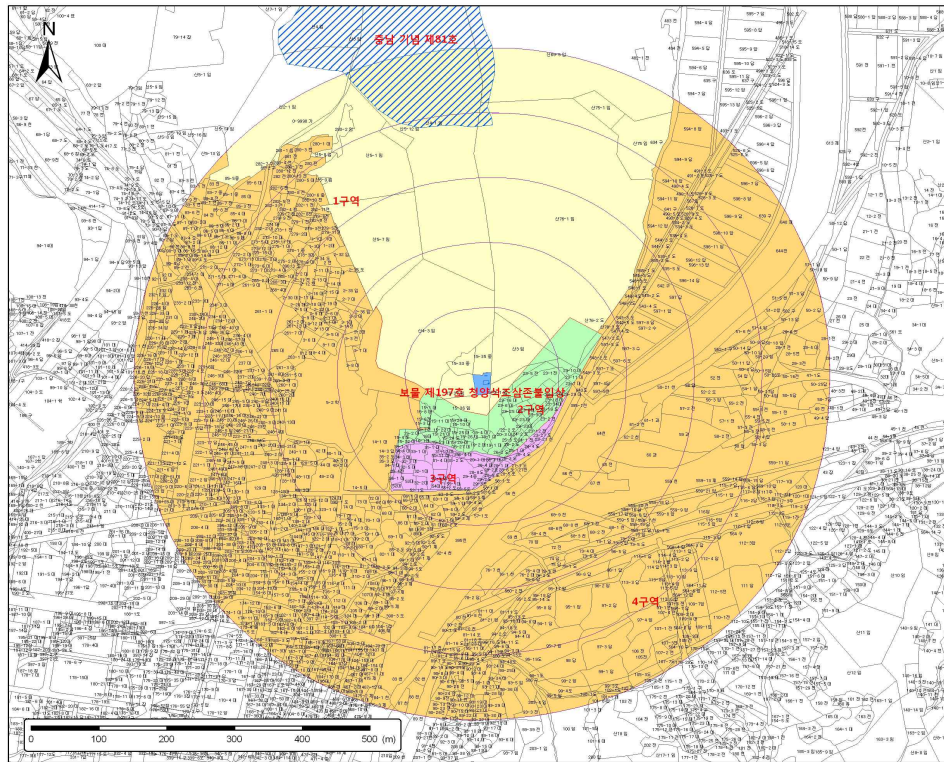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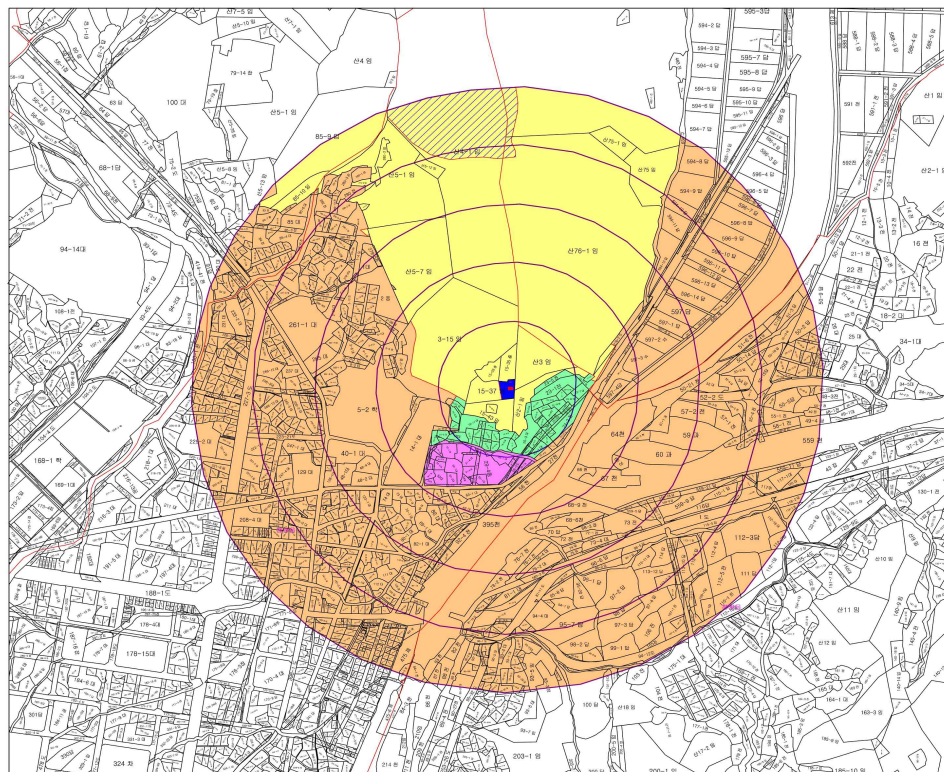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한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37

범 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축 적	1:4,500
-----	---------

【 변 경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37

범 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축 적	1:5,000
-----	---------

【 범례 표 (당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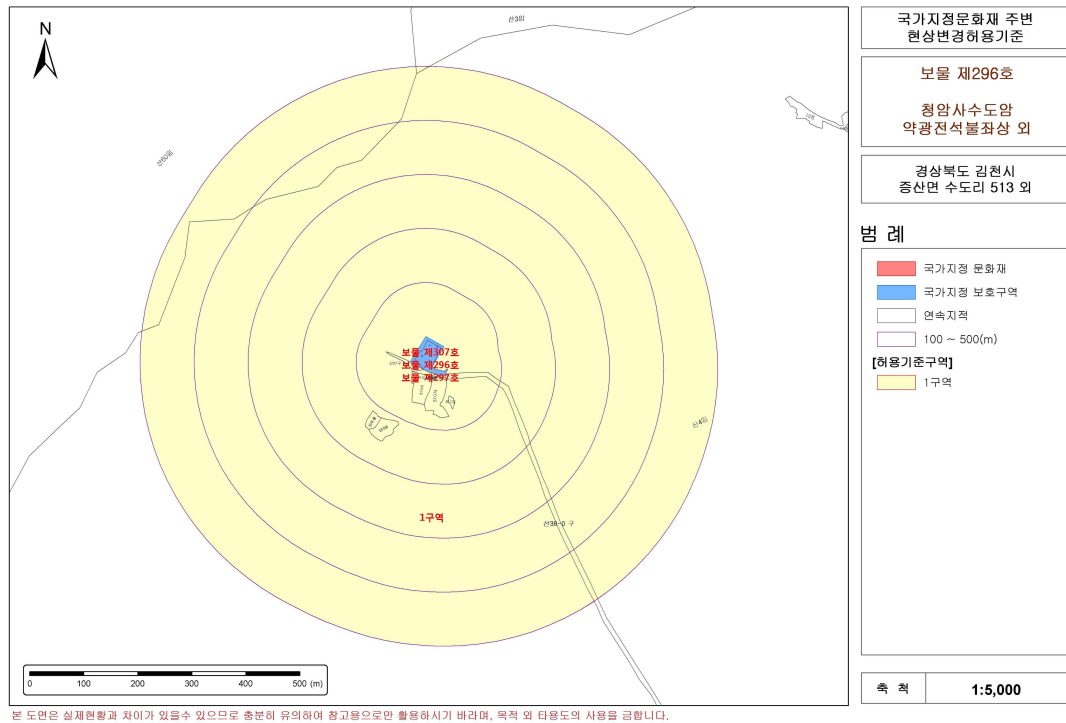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8m(5층) 이하	○ 최고높이 21m(5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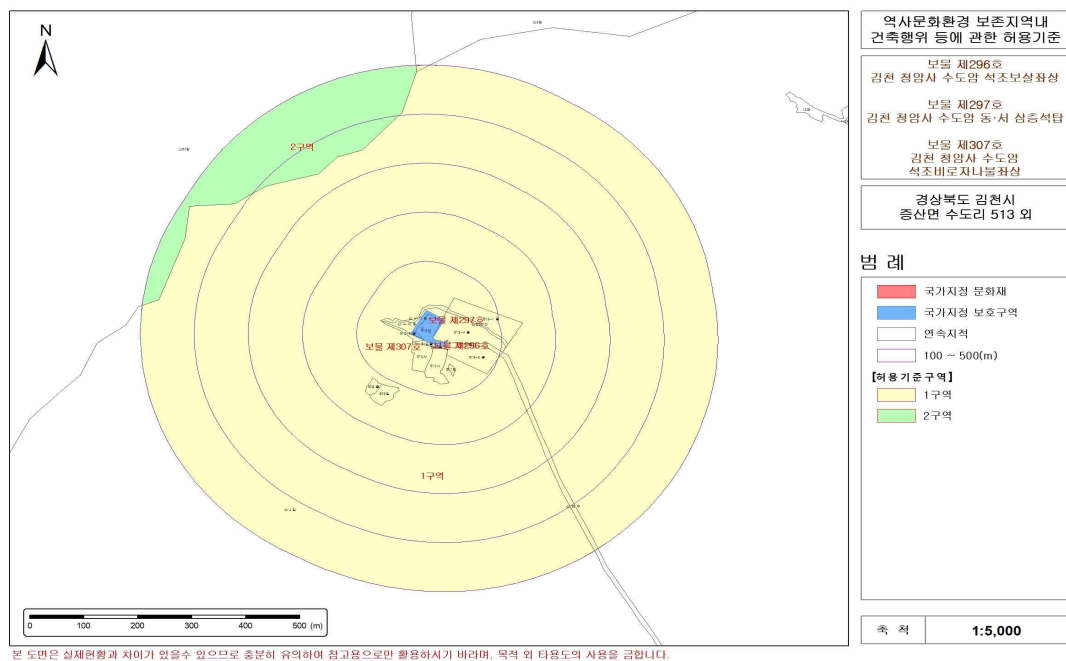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8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296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29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30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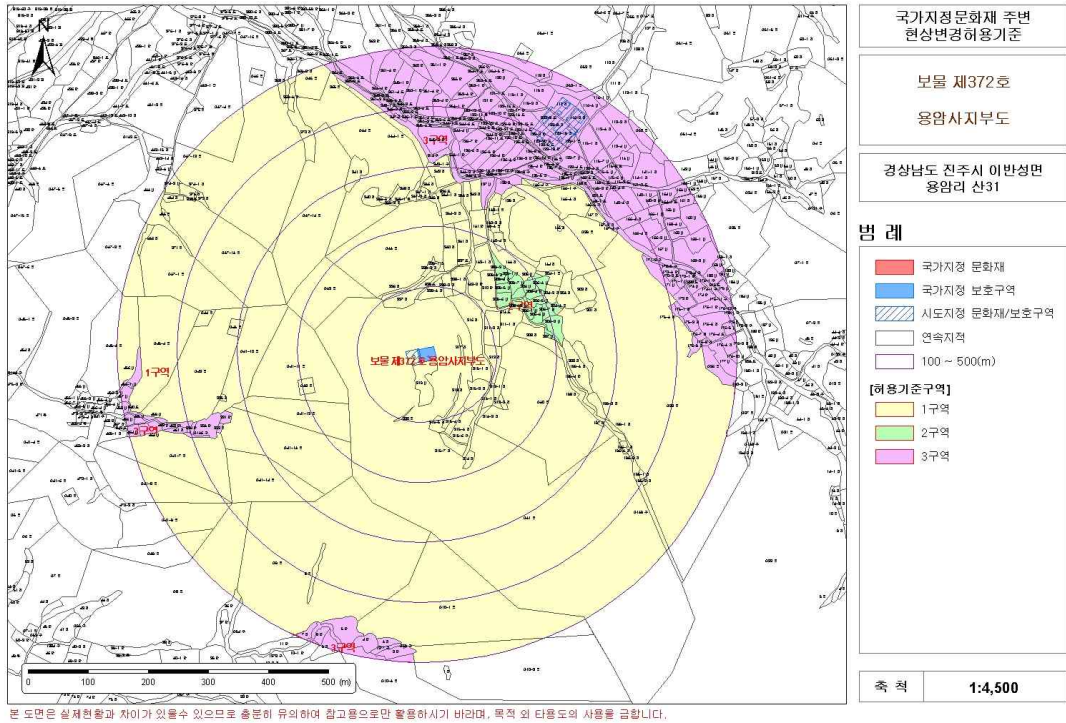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 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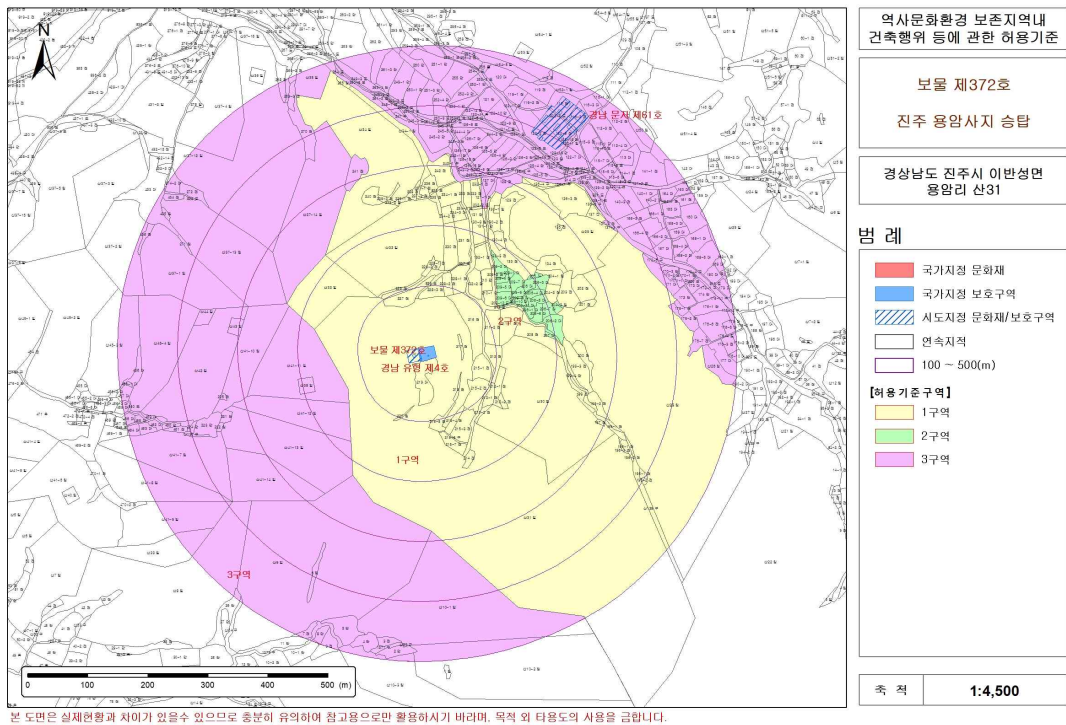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72호 “진주 용암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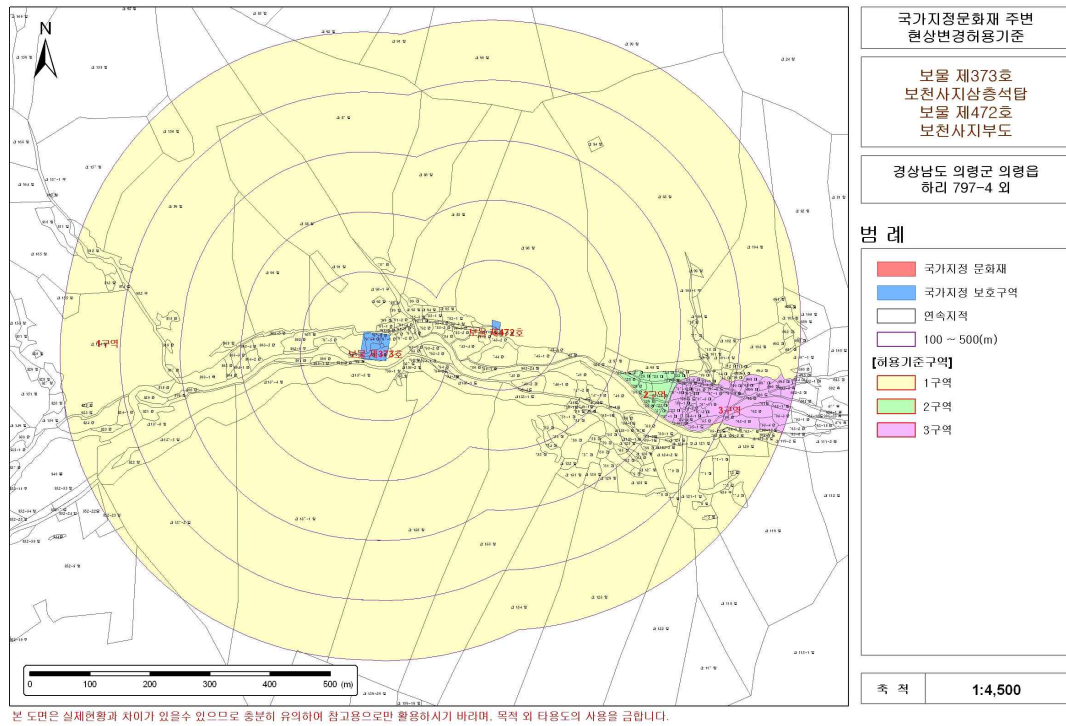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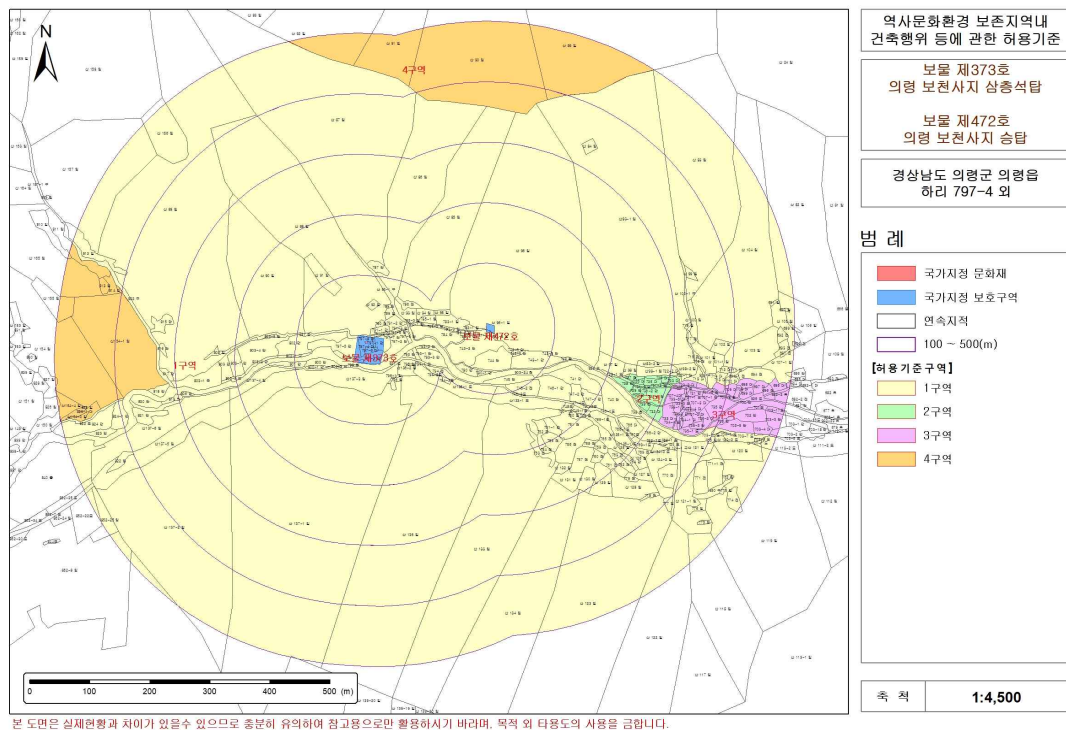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73호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72호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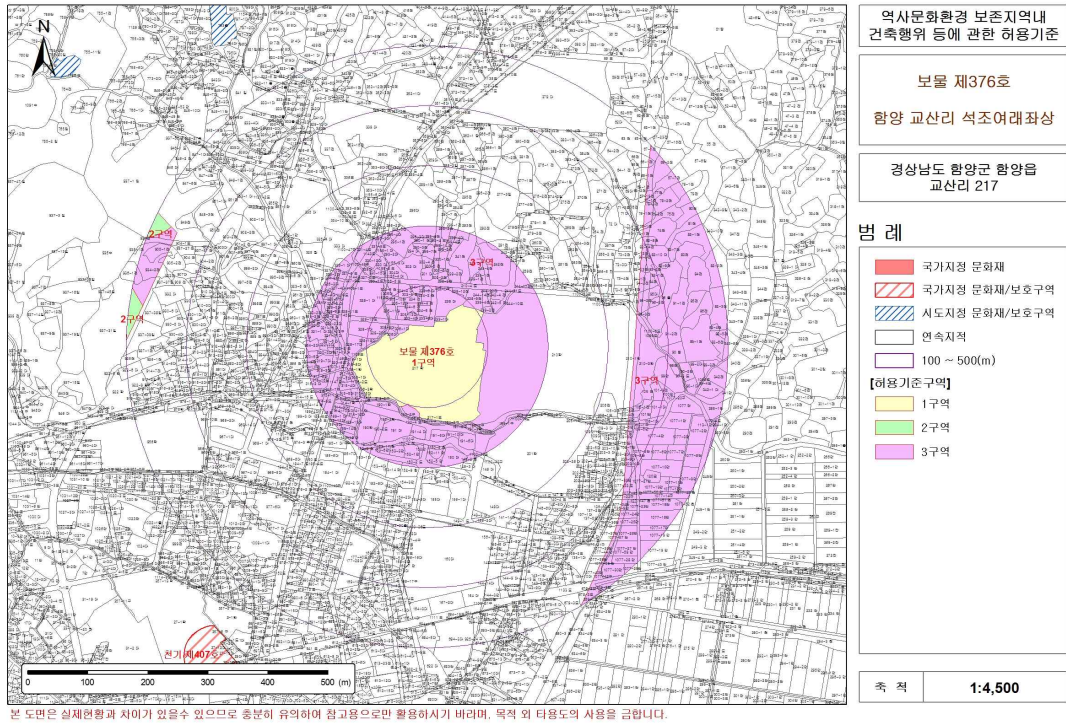
【 범례 표(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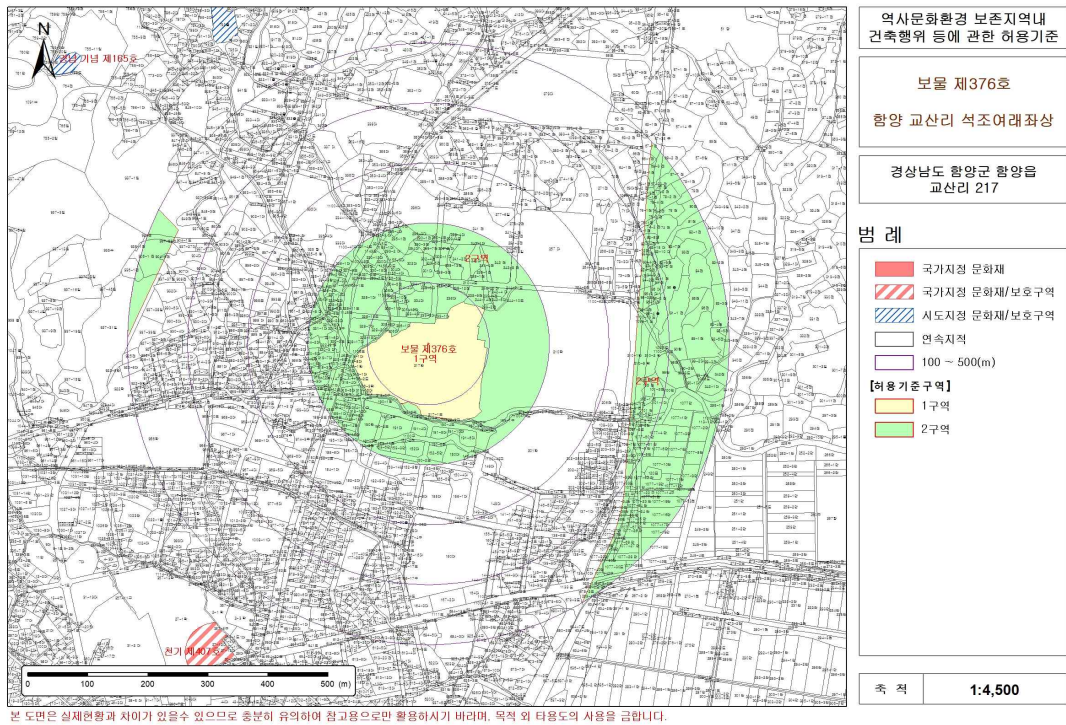
【 범례 표(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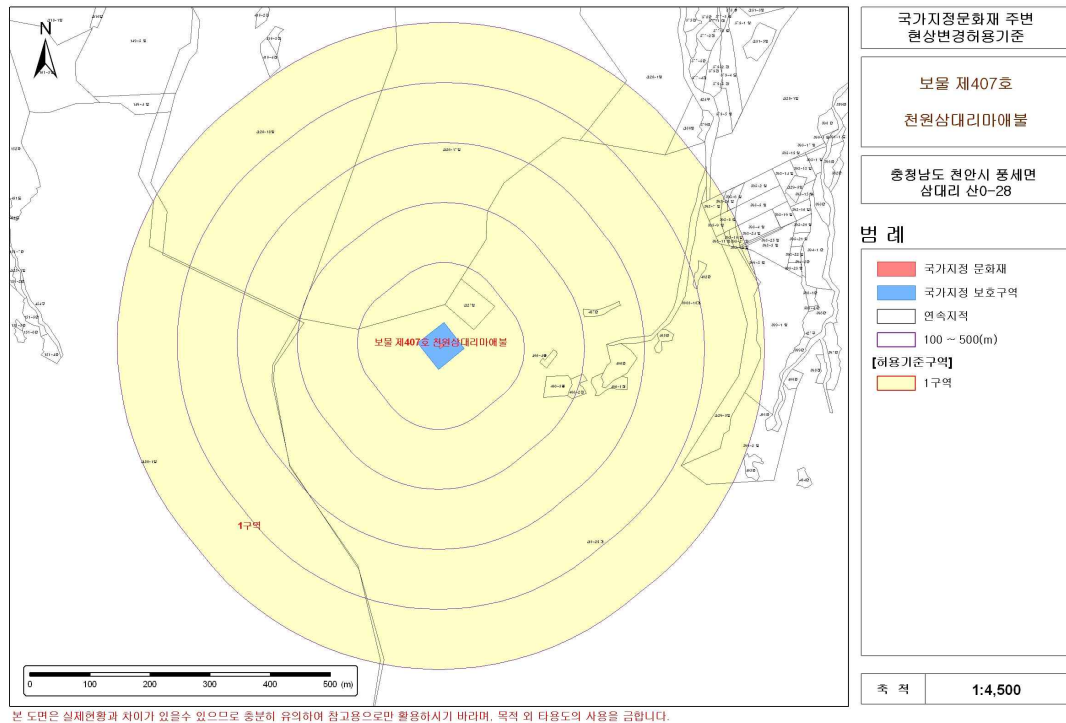
【 범례 표(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3구역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냥군묘역)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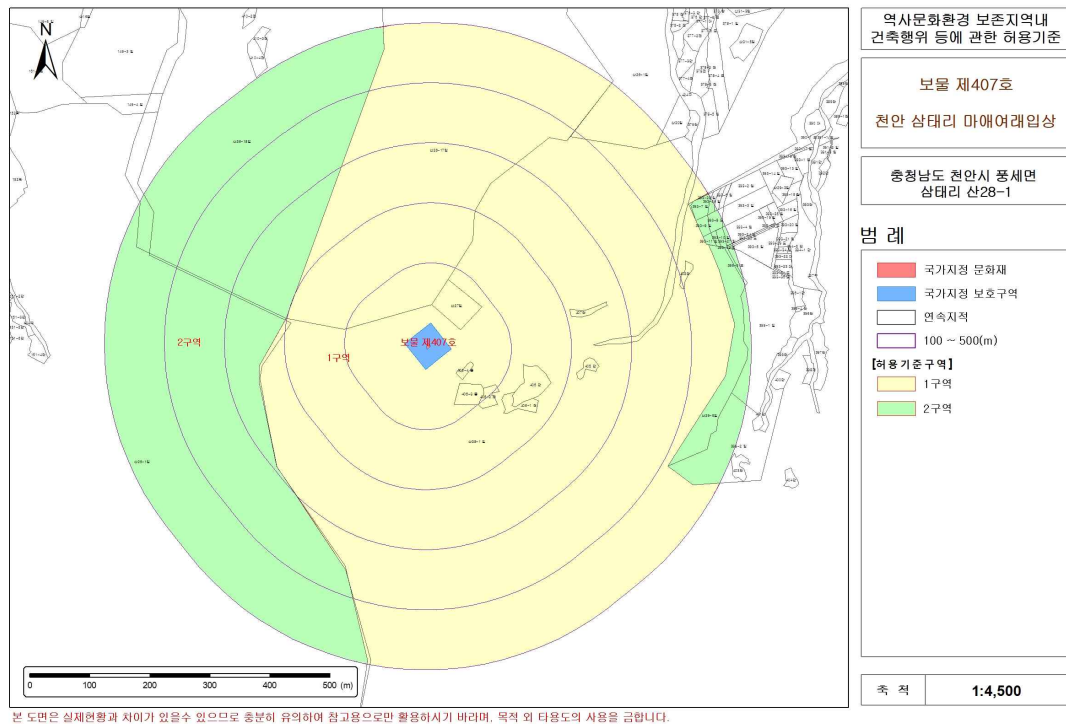
【 범례 표(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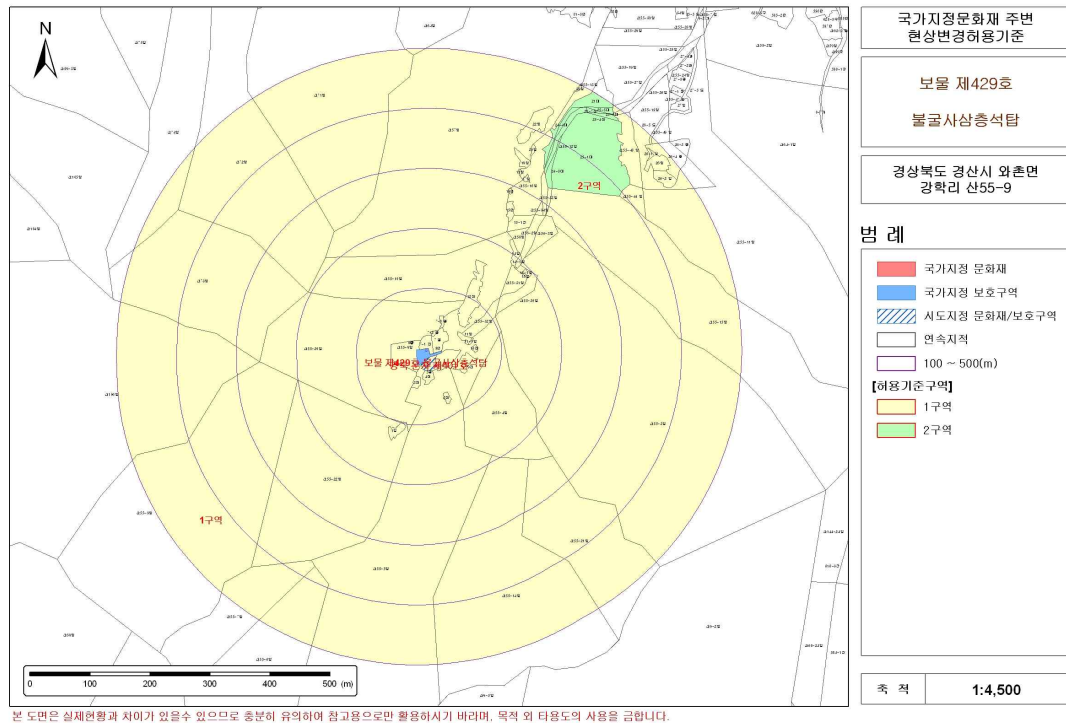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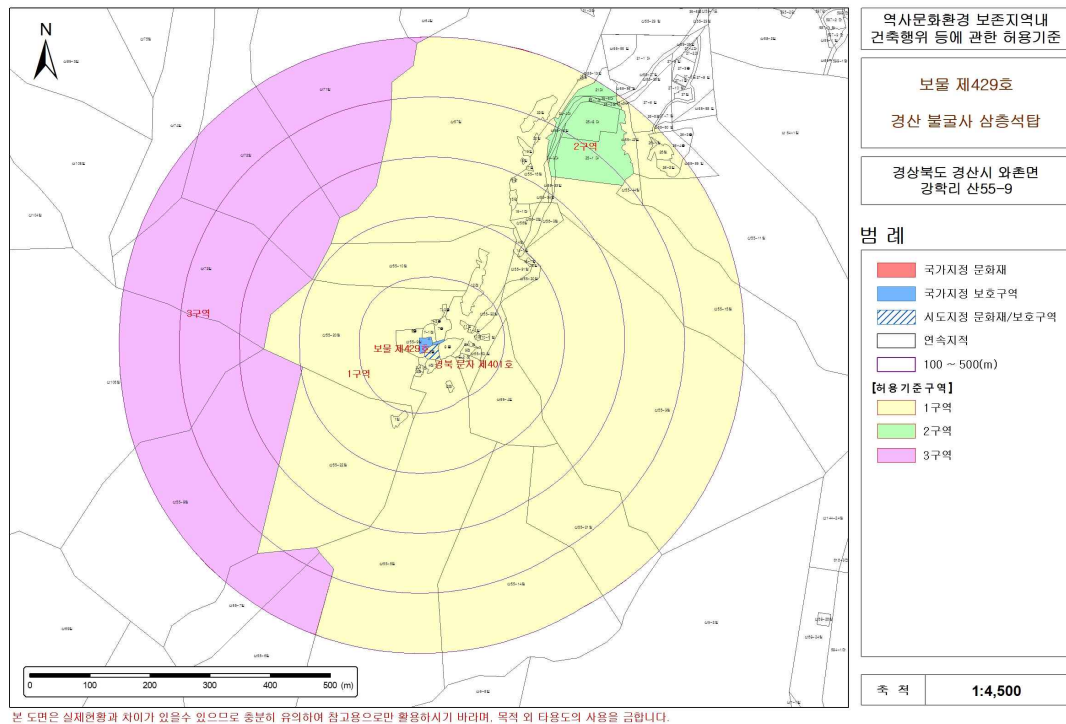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29호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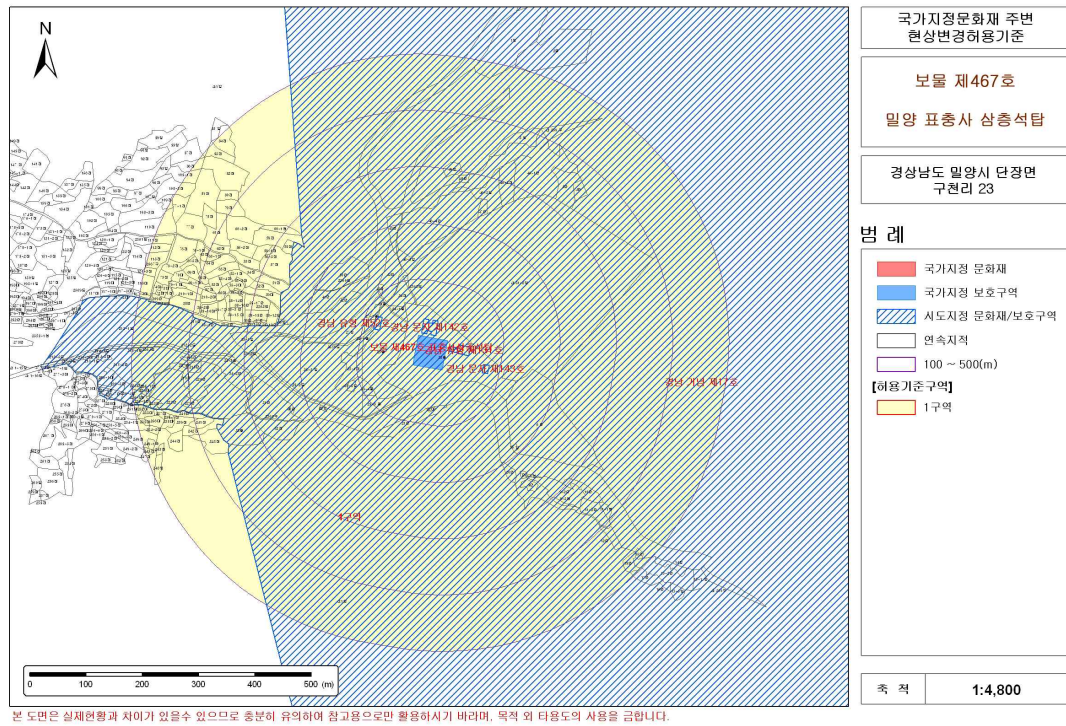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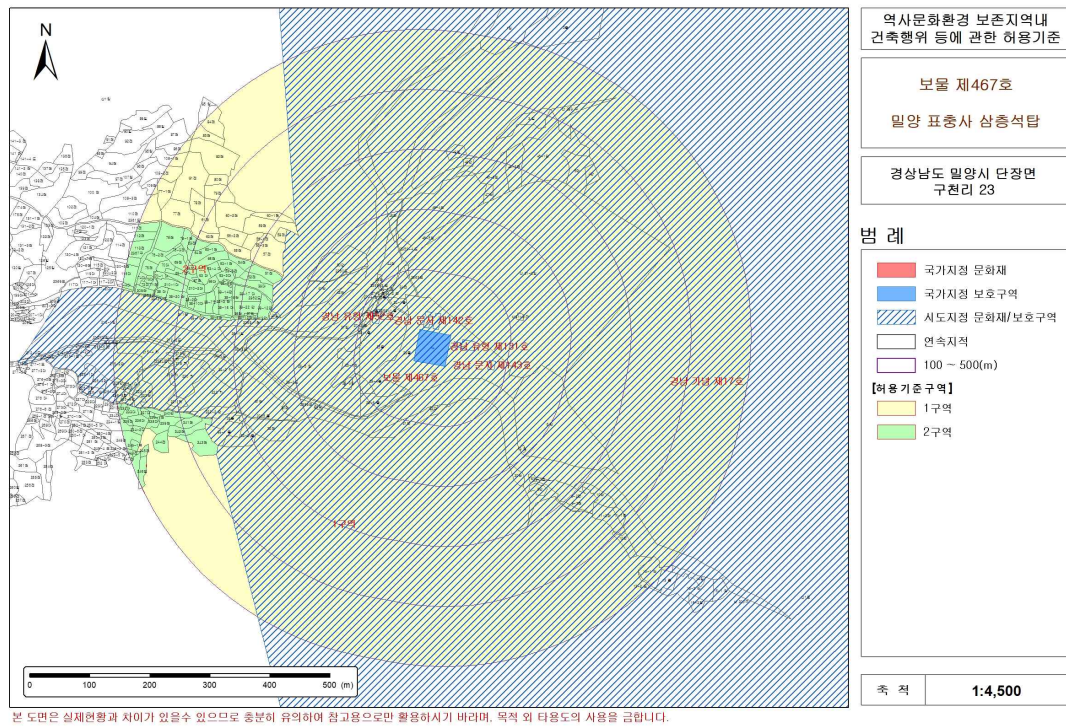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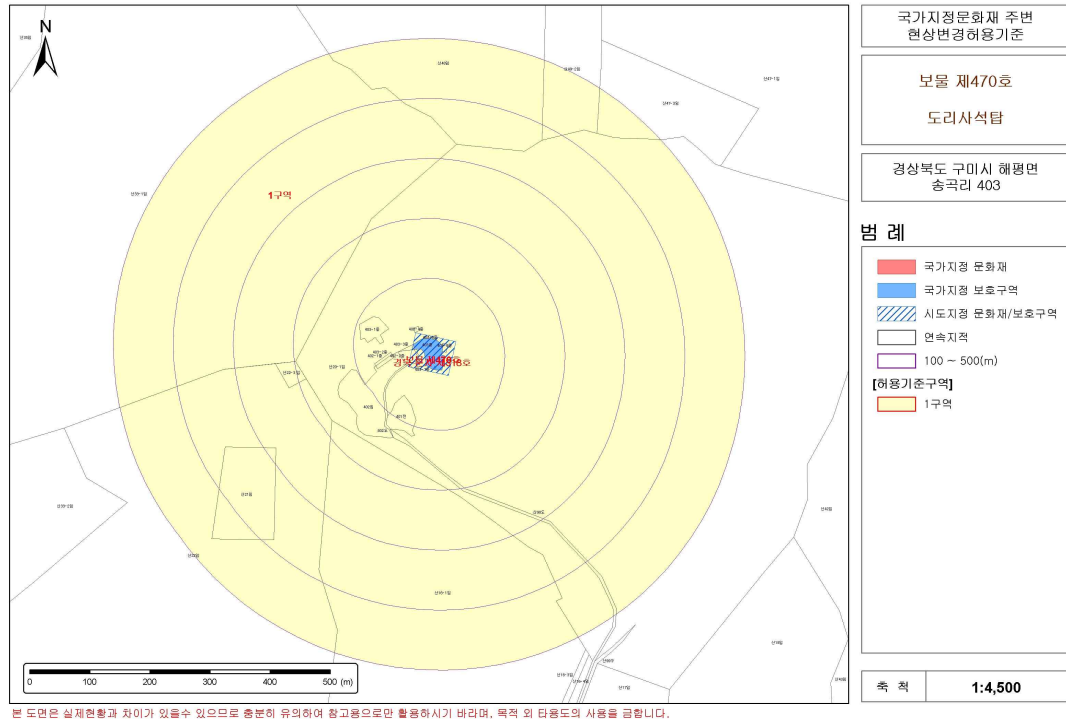
【 범례 표(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표충사 경내는 제외)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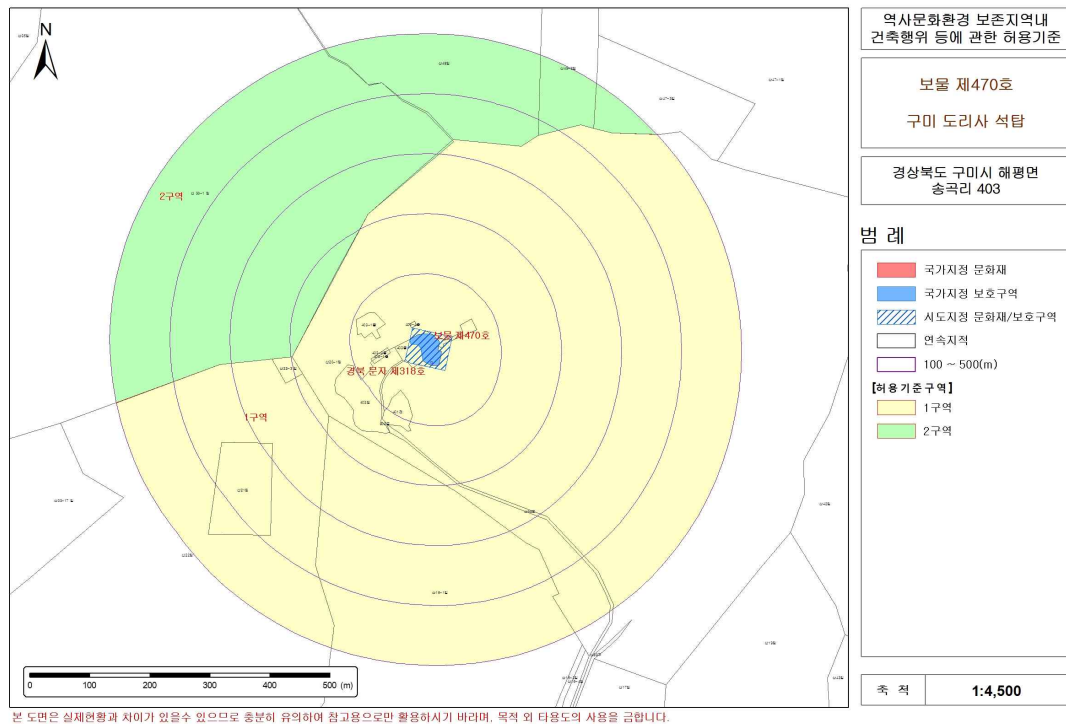
【 범례 표(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단, 대지에 한하며 그밖에 지목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표층사 경내는 제외)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70호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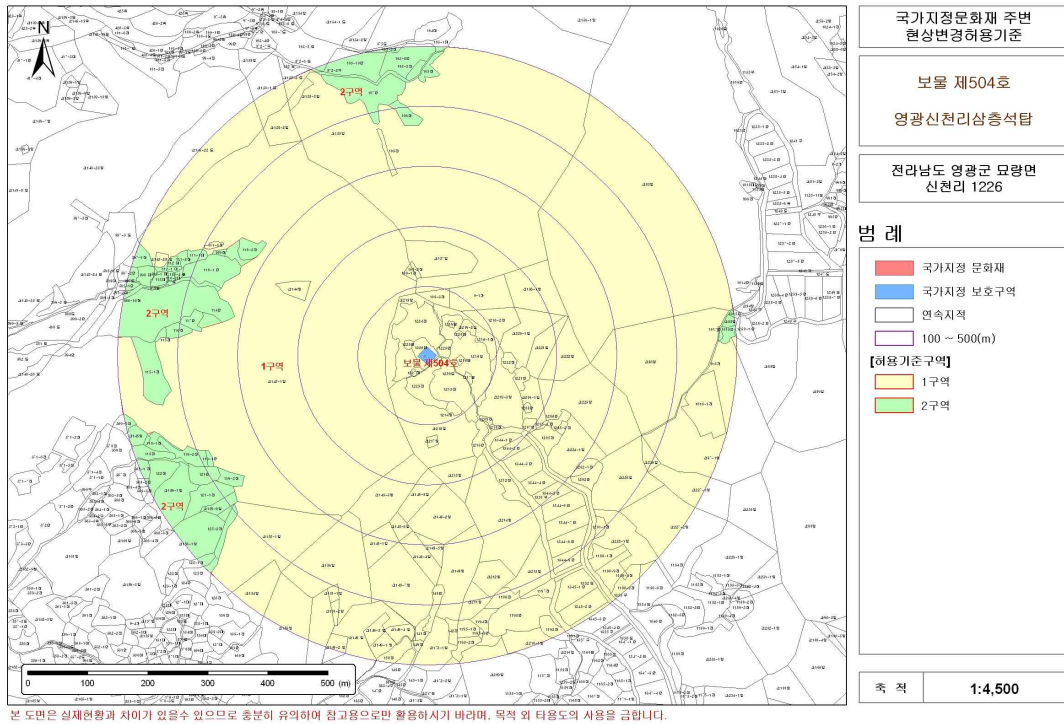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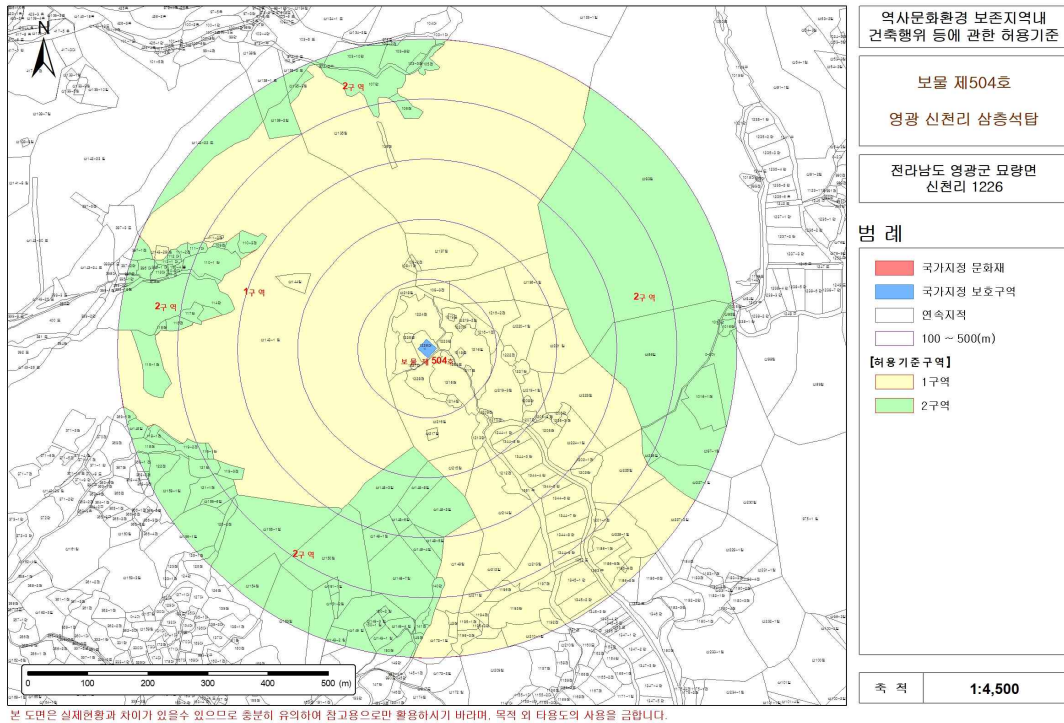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504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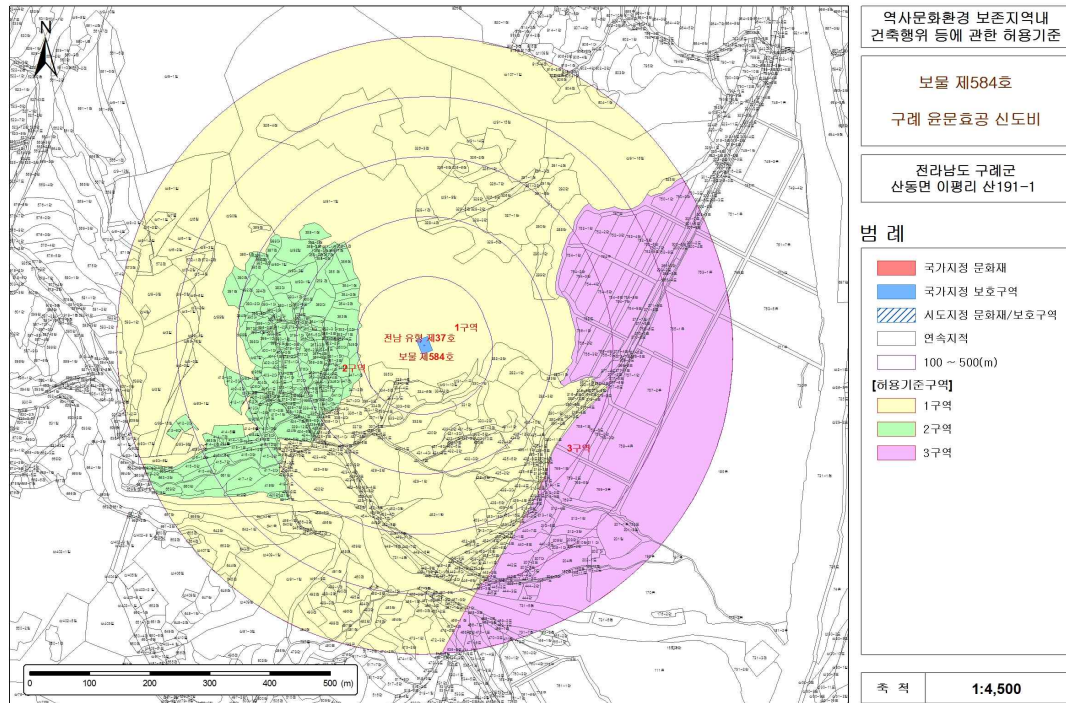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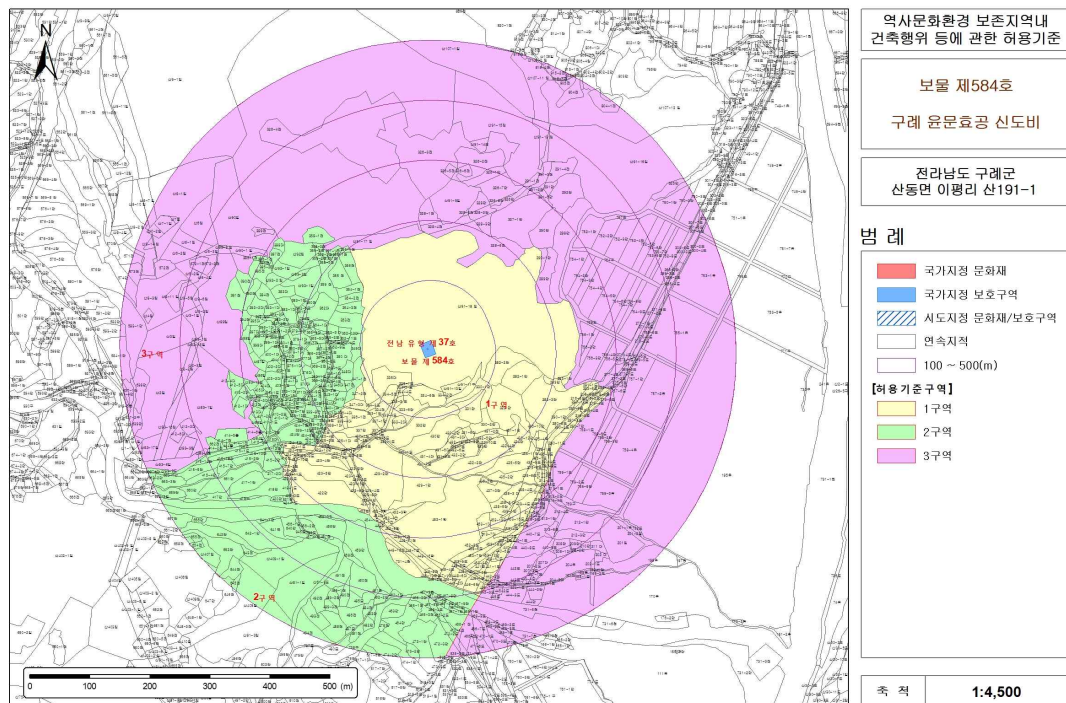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65호
성주석동마애불상군

경상북도 철곡군 기산면
노석리 선43-2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해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속척 1:4,50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보물 제655호

철국 노석리 마애불상군

경상북도 철국군 기산면 노석리 산43-2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속적 **1: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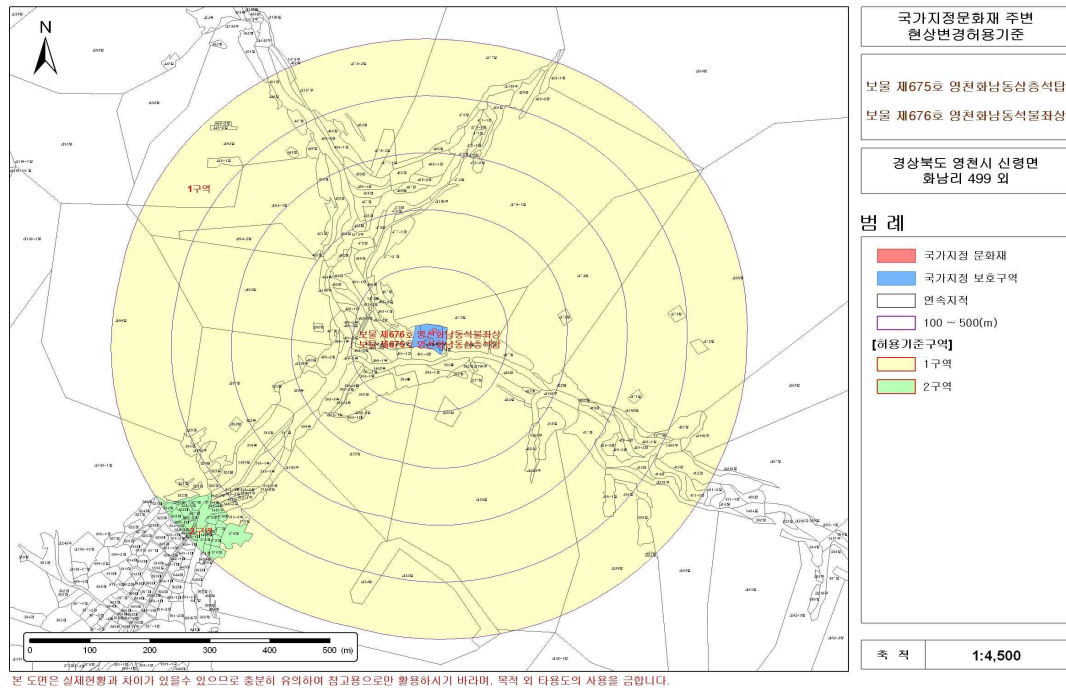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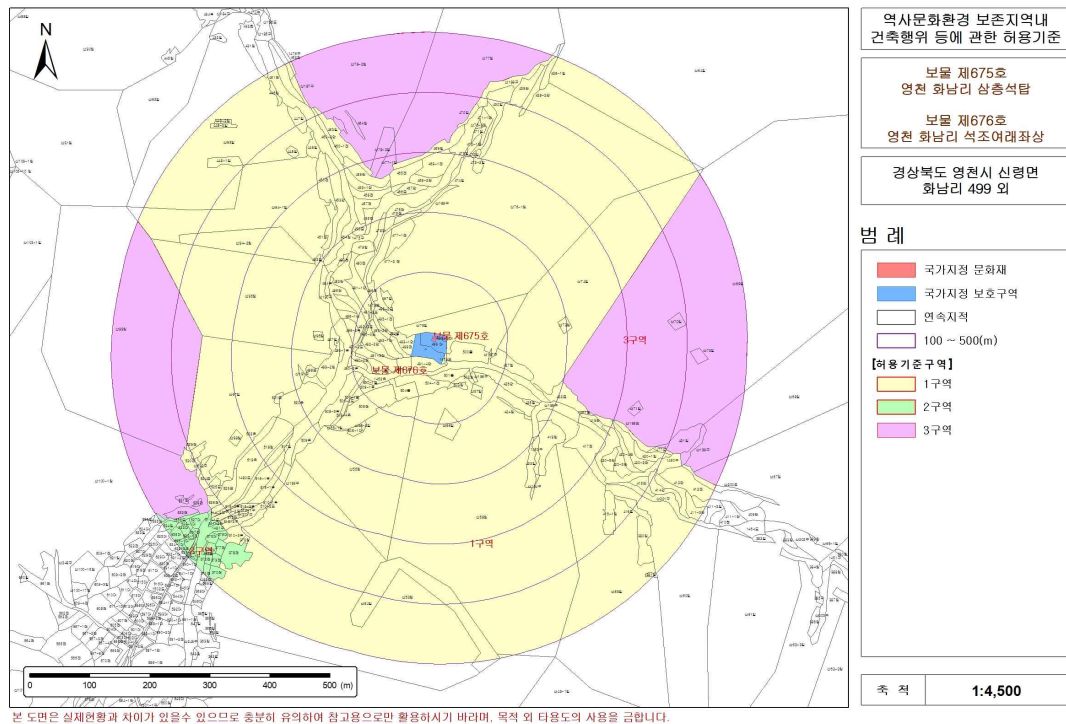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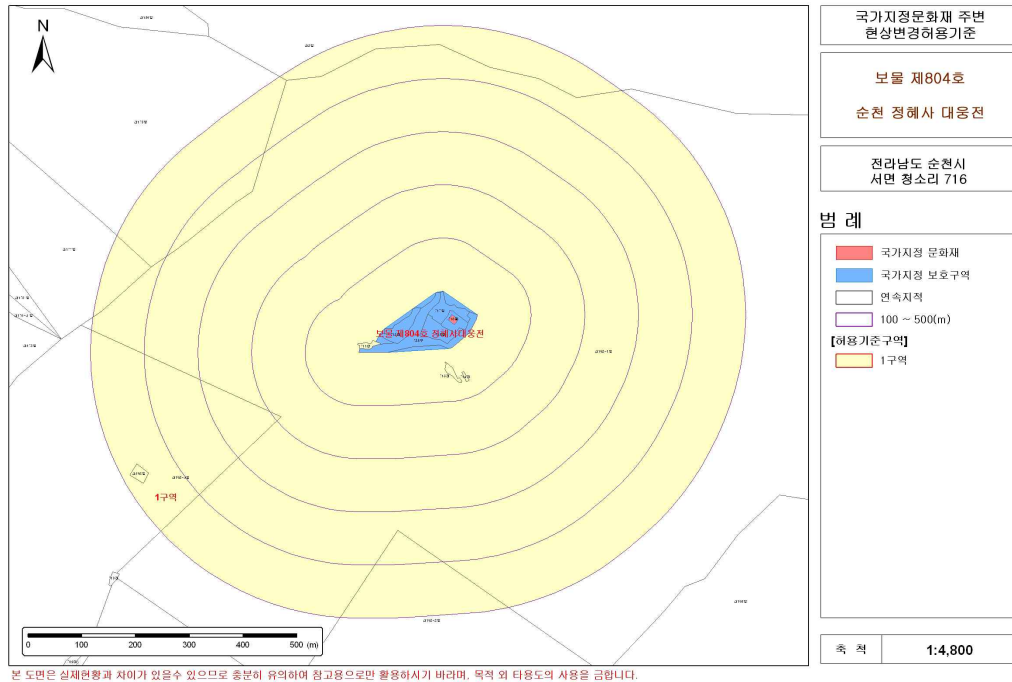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한광사 경내는 제외)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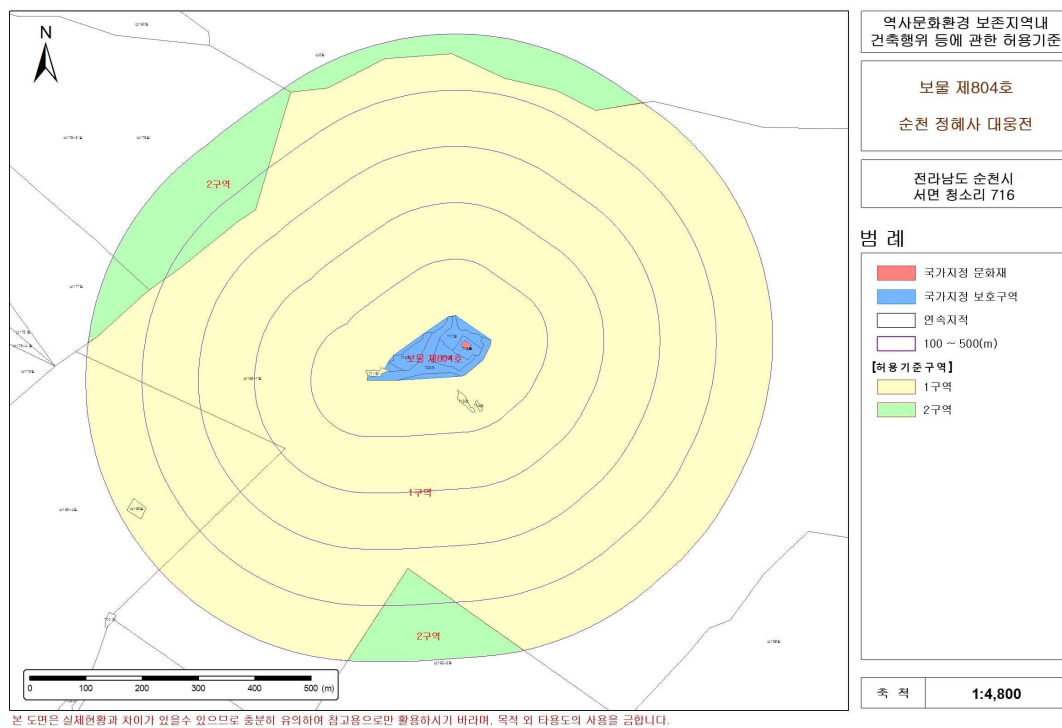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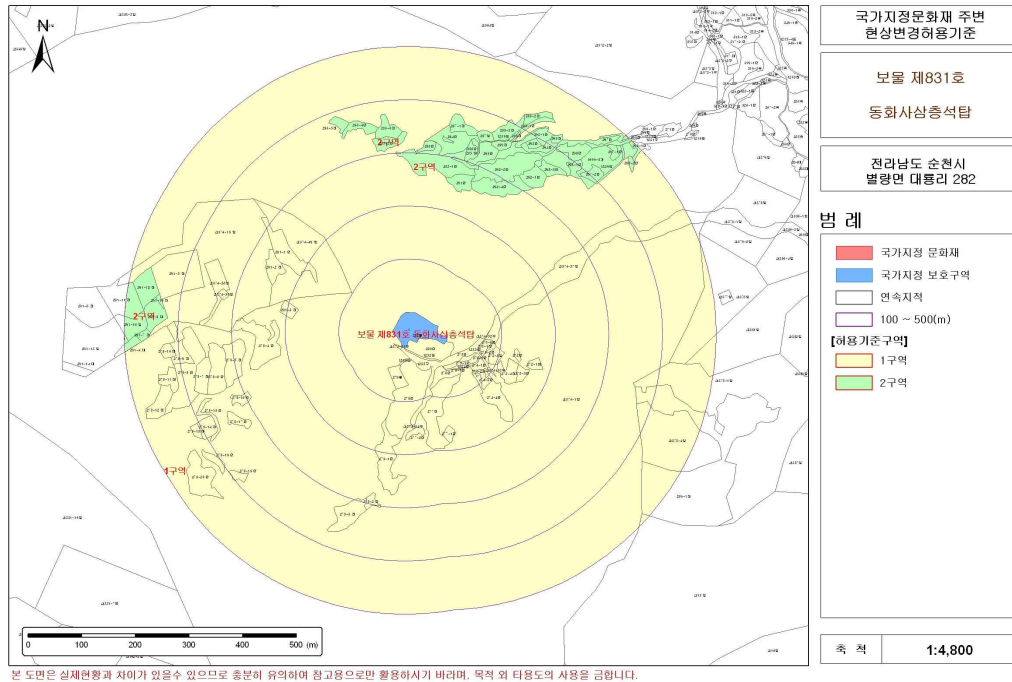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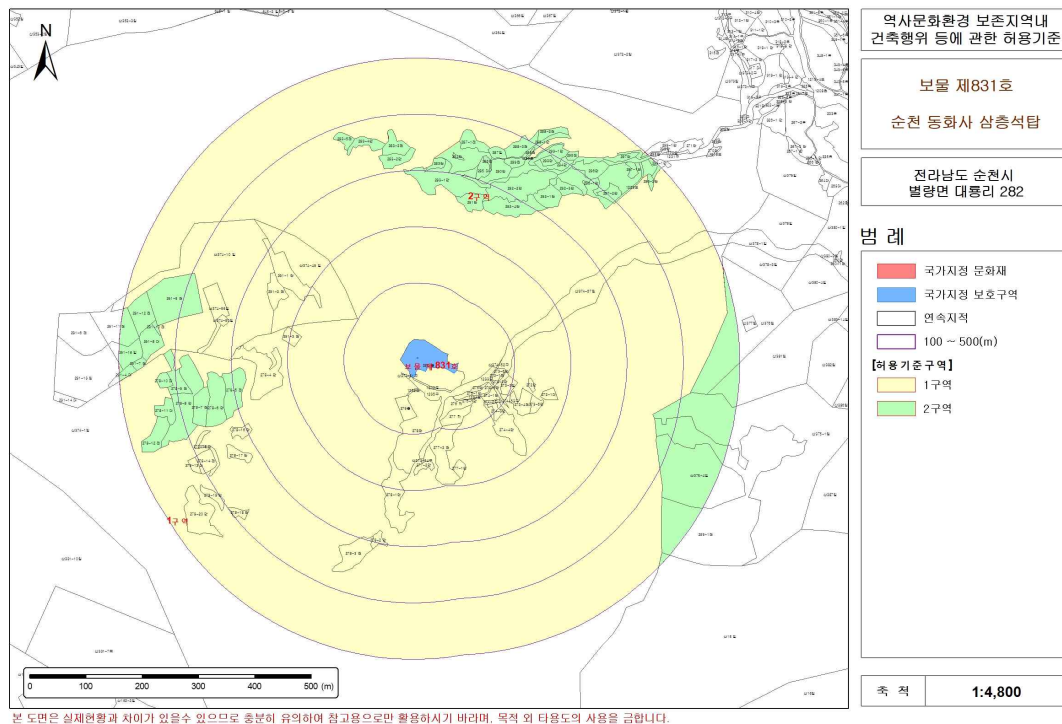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31호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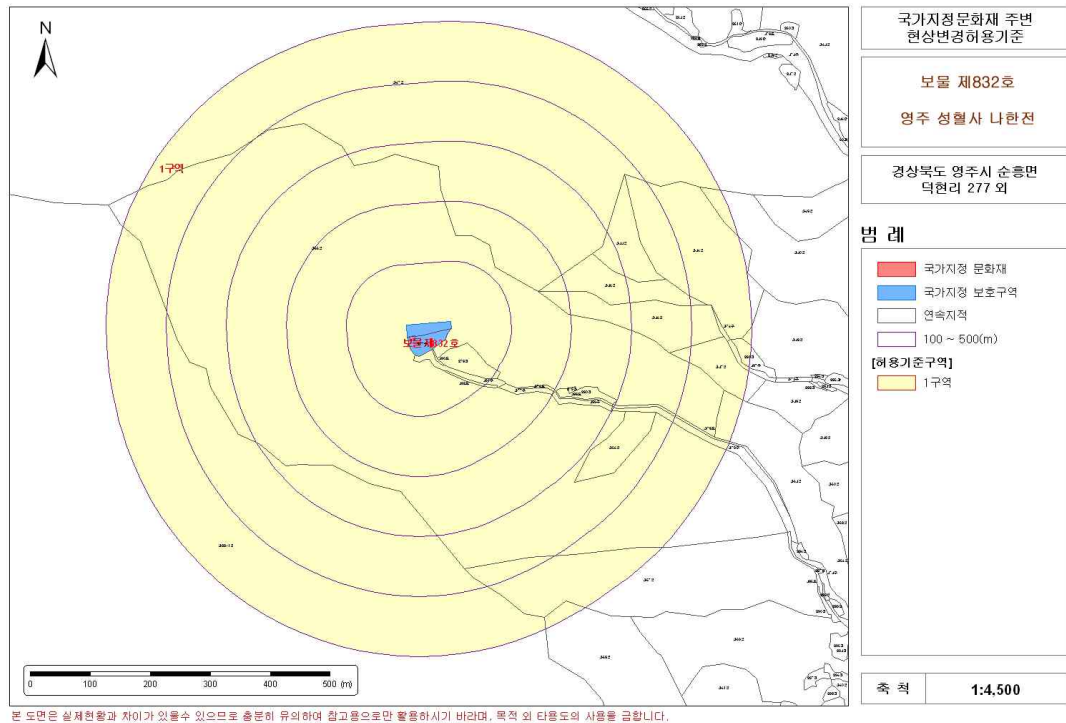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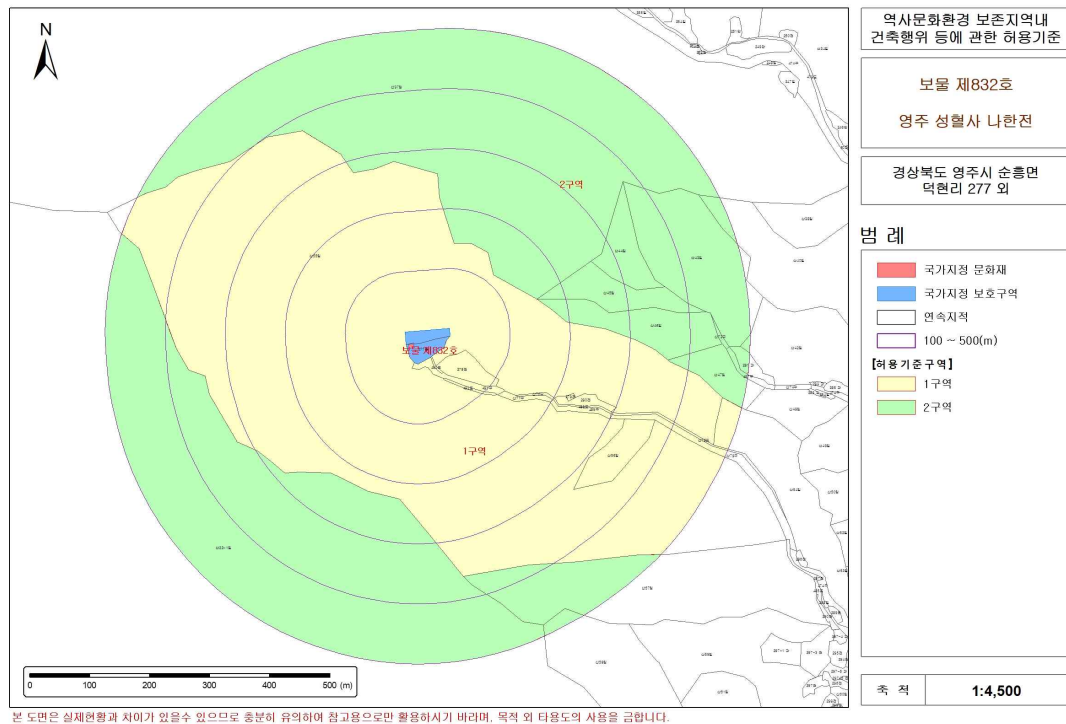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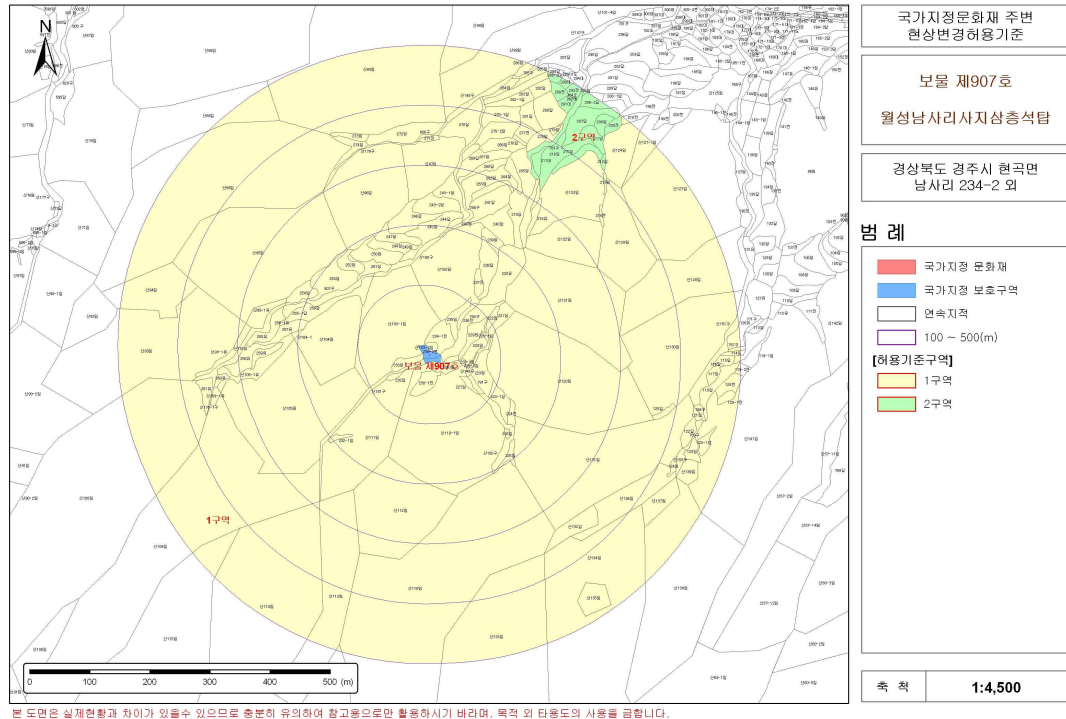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성혈사 경내는 제외)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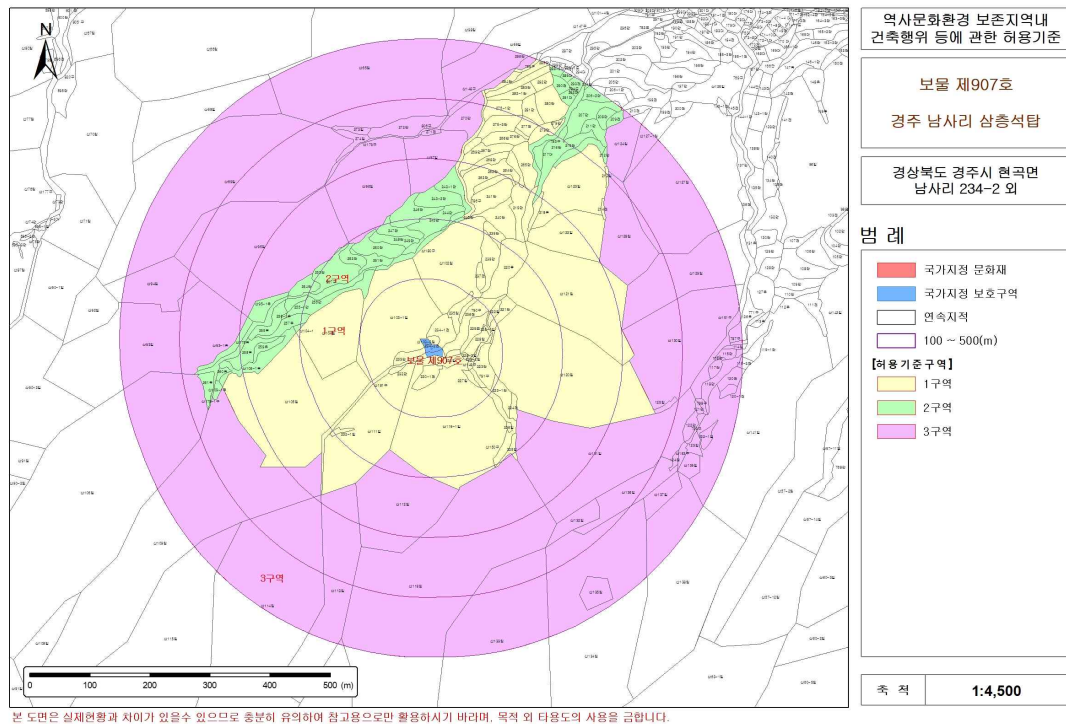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07호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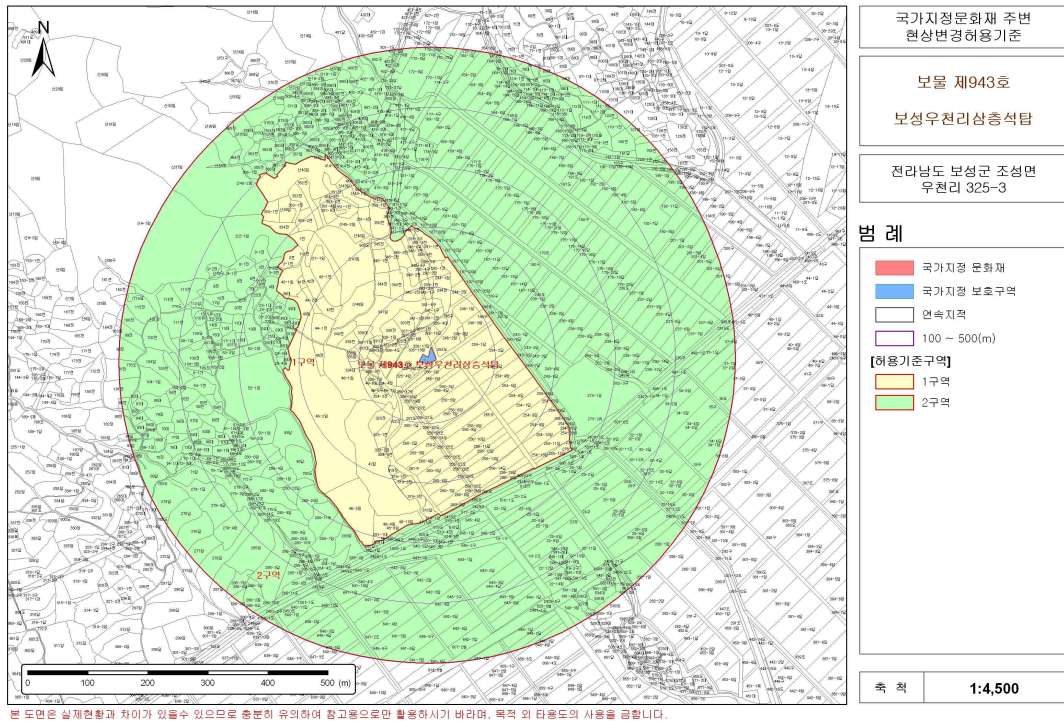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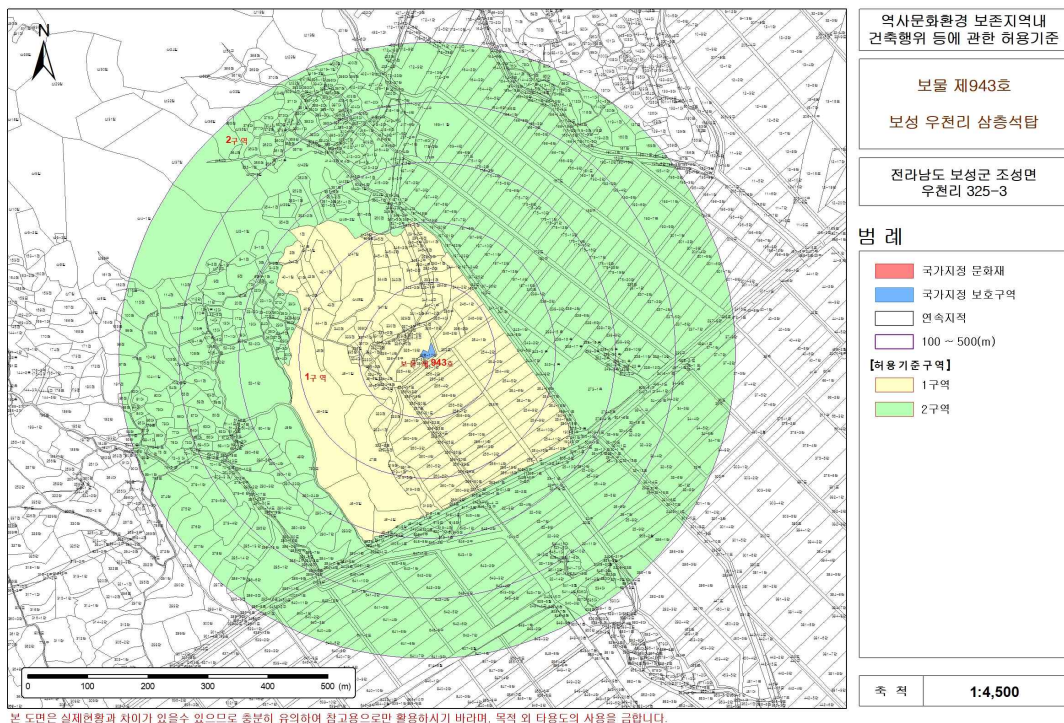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43호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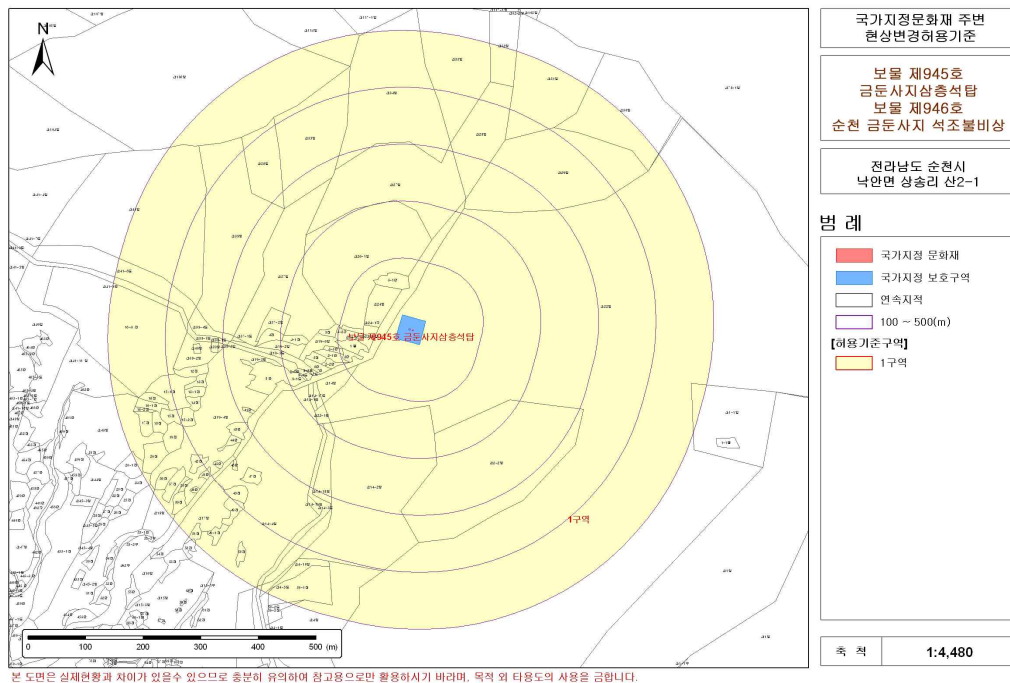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 기존범위 내 개축·재축 가능		
제2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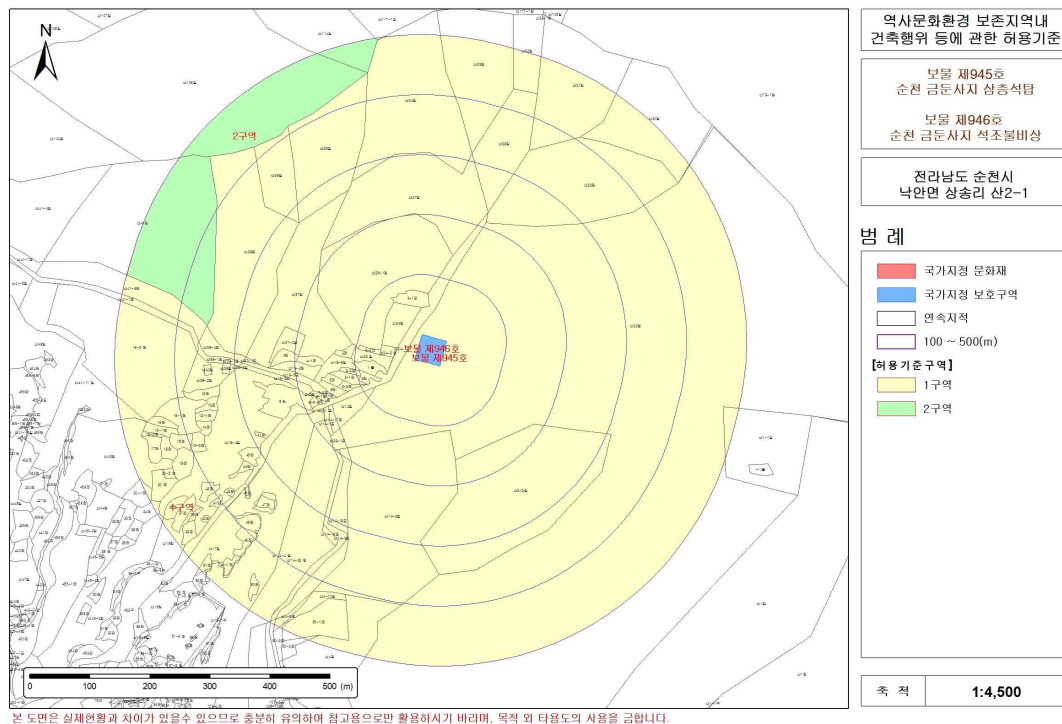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945호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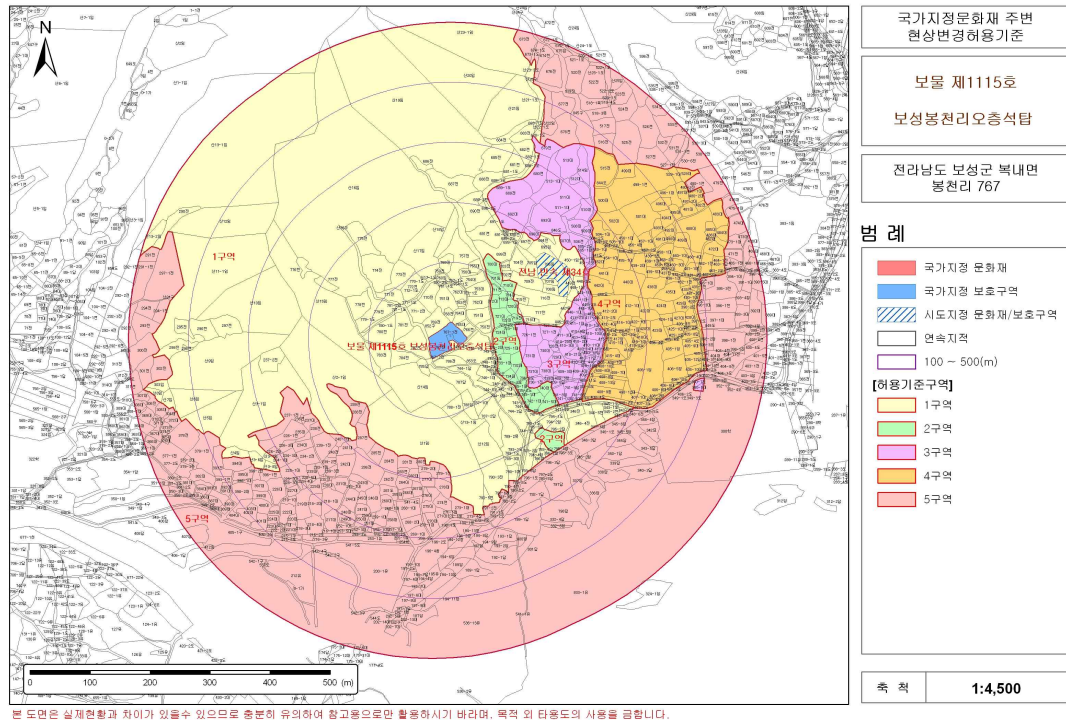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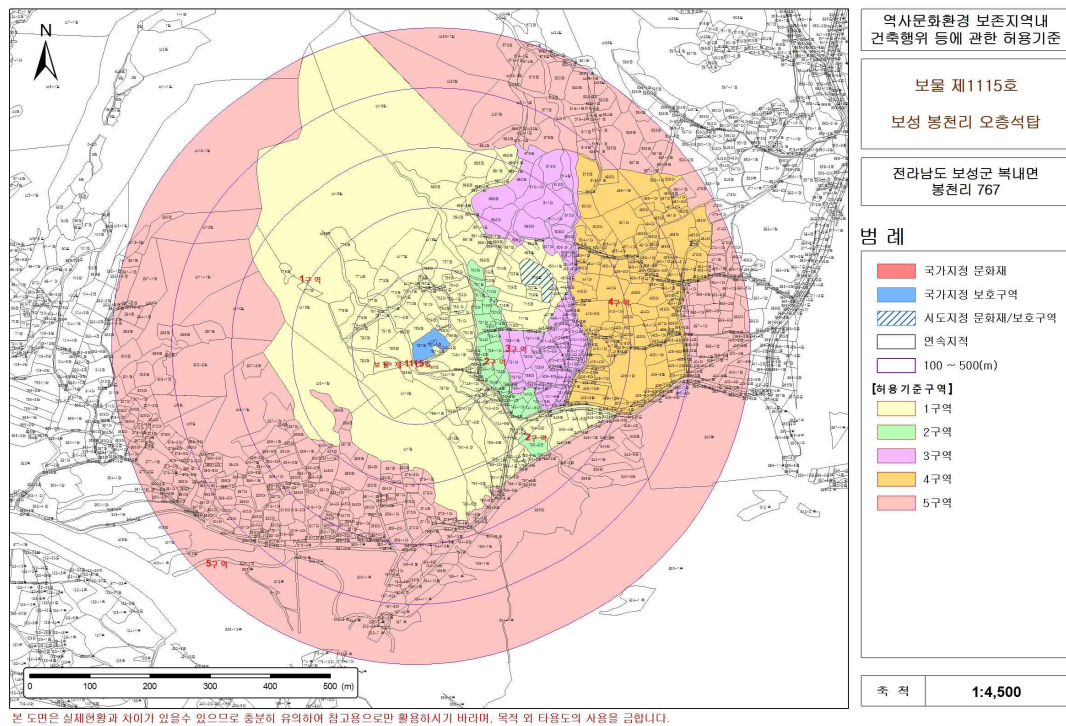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 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115호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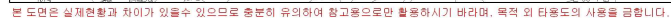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 기존 범위내 개축 가능		
제2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 계기관 입회
제3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 (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 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 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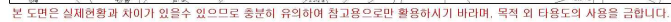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터 파 기 시 관 계 기 관 입 회
제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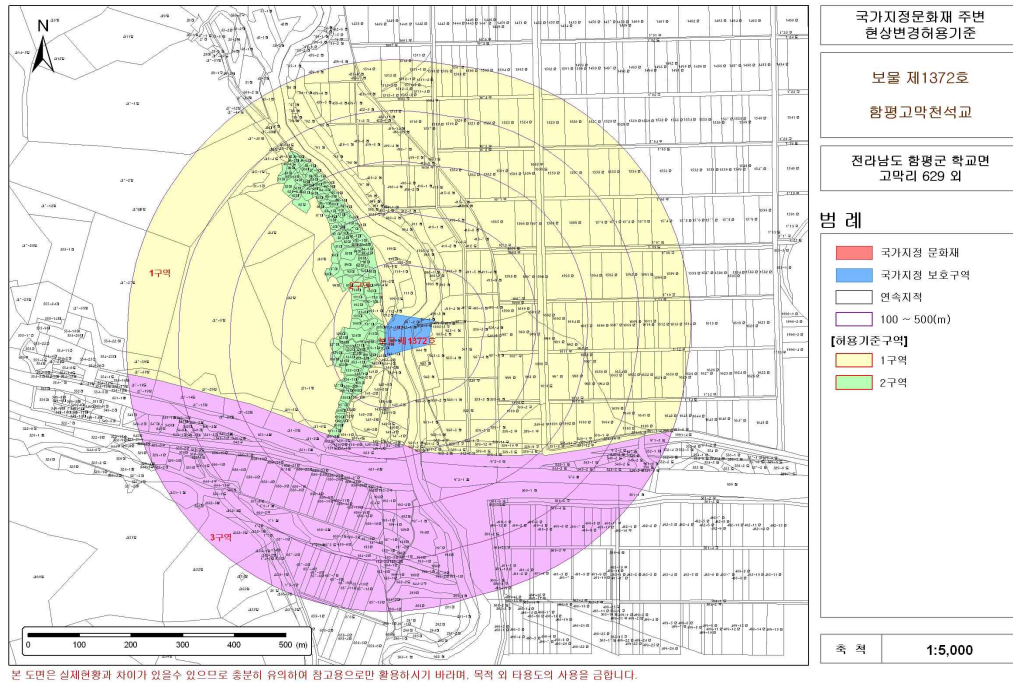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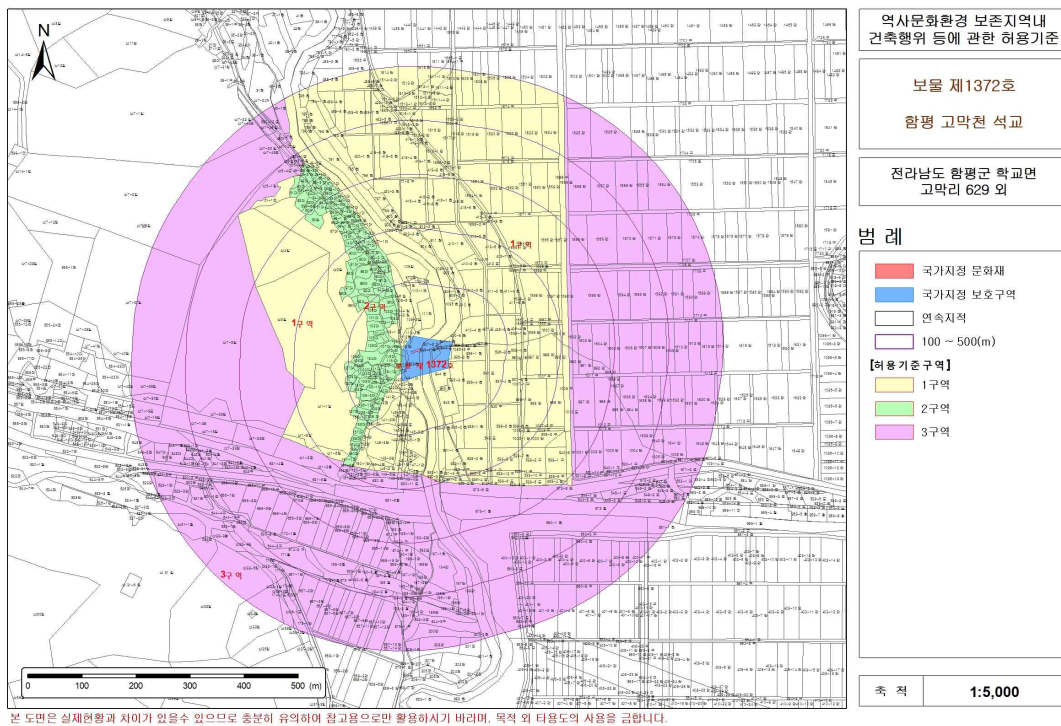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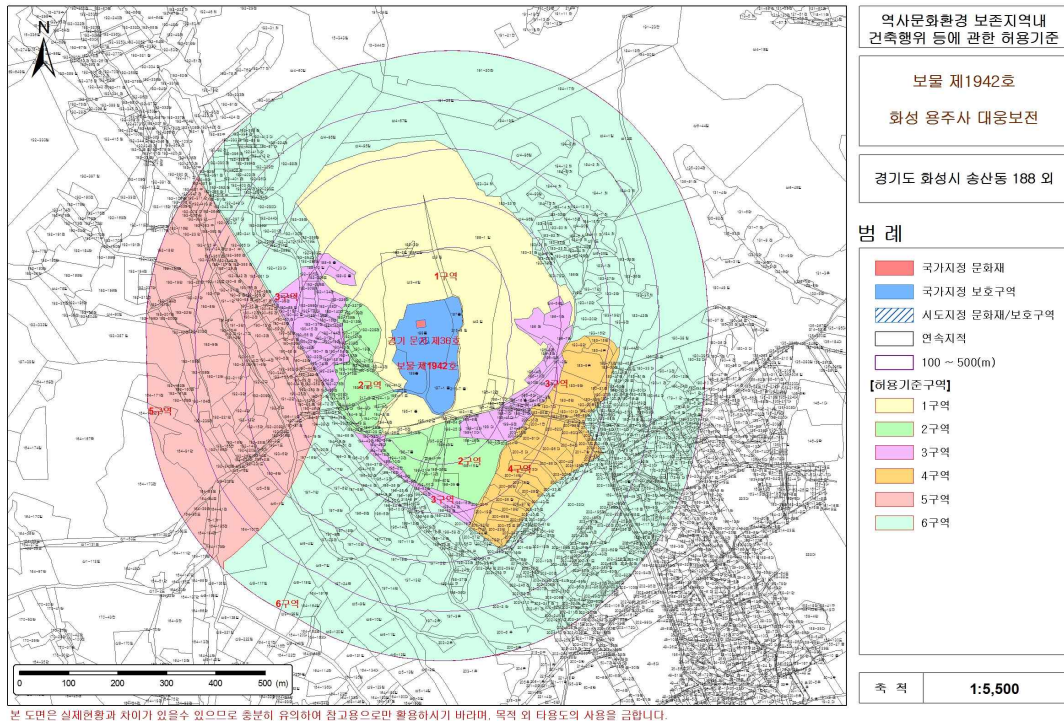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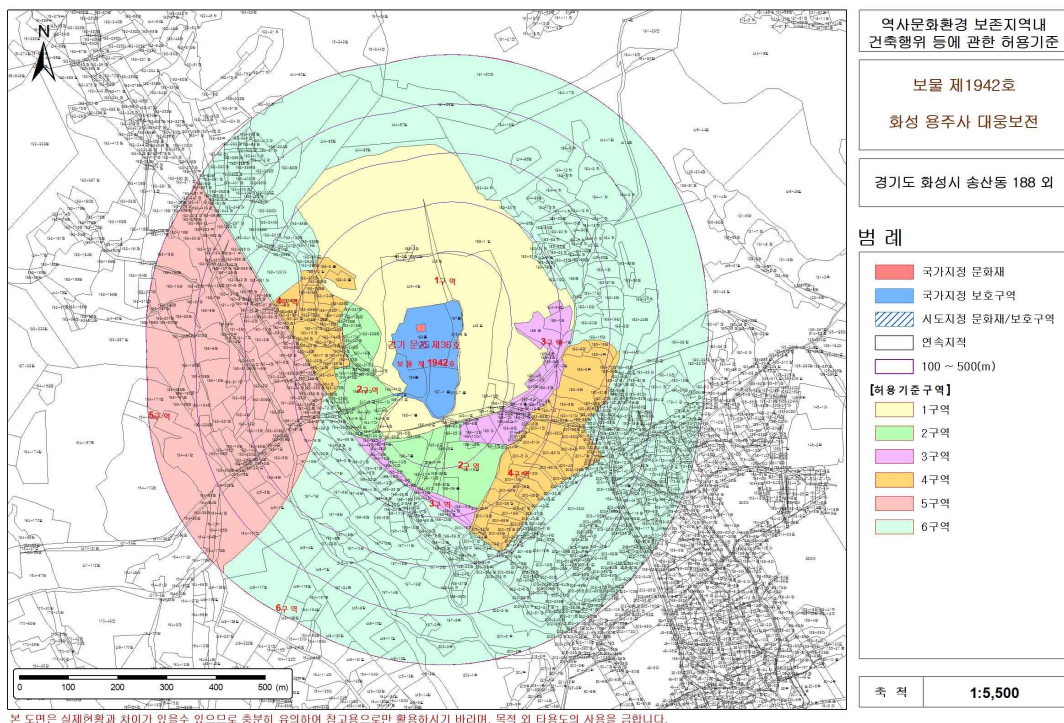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위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위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사적 제206호 “화성 읍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 사적 제206호 “화성 읍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보고사항】

안전번호 건축 2020-10-012

1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등 허가신청 1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1건	원안가결 8건 조건부가결 2건 부결 1건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	충남 공주 (○○○)	☐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62번지 외 2필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43m 이격) ○ 사업내용 : 진출입로 개설 - 사업면적 : 205㎡ - 콘크리트포장 : 폭 4m, t=0.20m * 단독주택 개요 - 건축(연)면적 : 114.45㎡ - 높이 : 7.5m	원안가결	‘20.09.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605호 고령 장거리 암각화	경북 고령 (○○○)	☐ 자원순환시설 신축 ○ 위치 :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395번지 외 5필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80m 이격, 개별법) ○ 사업내용 : 자원순환시설 신축 - 사업면적 : 2,737㎡ - 건축(연)면적 : 990.51㎡ - 높이 : 13m - 구조 : 일반철골구조	원안가결	'20.09.24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	경북 안동 (○○○)	☐ 도로선형개량 공사(변경허가) ○ 위치 :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m 이격) ○ 사업내용 : 도로선형개량 공사 - L=592.0m, B=0.2~16.2m - 콘크리트포장 A=1,123.6㎡, L=570.0m - 옹벽블록 H=2.0~2.5m, L=18.0m * '20년 3월 1차 자체검토회의 : 조건부 가결 - 절,성토 부분을 최소화하여 사업 시행 * '20년 6월 2차 자체검토회의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원안가결	'20.09.24
국보 제187호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경북 영양 (○○○)	☐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383-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80m 이격) ○ 사업내용(기간연장에 따른 재허가) - 대지면적 : 560㎡ - 건축(연)면적 : 86.17㎡ - 층수/높이 : 1층/5.5m - 구조 : 일반목구조 * '19년 4월 제1차 자체검토회의 :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9.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경북 청도 (○○○)	☐ 석빙고, 청도읍성 주변 정비사업 실시 ○ 위치 :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341-1외 * 보호구역 및 제1구역 ○ 사업내용 - 1구간 : 마사토 포장 및 잔디식재 A=971m ² 등 - 2구간 · 흙콘크리트 포장 A=800m ² 및 잔디블록 포장 A=213m ² · 거친돌 석축 설치 H=0.5m, L=12.5m · 추가형 정자(5,100*3,200*2,800) 1개소 설치 · 교목 7주 및 관목 3,780주 식재 등 - 3구간 · 흙콘크리트 포장 A=647m ² · 추가형 정자(5,100*3,200*2,800) 2개소 설치 · 교목 12주 및 관목 700주 식재 등 - 4구간 · 목교(W=1,000, L=3,700) 3개소 철거 및 설치 · 교목 80주 및 관목 1,280주 식재 등 - 5구간 · 잔디블록 포장 A=1,196m ² 및 흙콘크리트 포장 A=69m ² · 교목 35주 및 관목 910주 식재 등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허가 (2020.9.16.)	원안가결	'20.09.2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충북 충주 (○○○)	☐ 탄금호 일원 상징조형물(포토존) 제작·설치(2차)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중앙탑 사적공원 일원) * 제1구역(문화재에서 120m, 260m, 390m 이격거리에 각 1개소) ○ 사업내용 : 상징조형물(포토존) 3개소 설치 <1. 탄금호의 낭만-우륵의 가야금> - 위치 : 중앙탑면 탑평리 2-3번지 - 규격 : 2.5m(폭) * 1.2m(길이) * 3.1m(높이) ※ 문화재에서 거리 : 260.8m <2.. 하늘을 나는 웨딩카> - 위치 : 중앙탑면 탑평리 48-1번지 - 규격 : 4.1m(폭) * 1.7m(길이) * 4m(높이) ※ 문화재에서 거리 : 298.3m <3. 무지개 뜨는 러브레터> - 위치 : 중앙탑면 탑평리 133-6번지 - 규격 : 3.6m(폭) * 1.5m(길이) * 3.1m(높이) ※ 문화재에서 거리 : 389.9m	원안가결	'20.09.24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 입상	충남 논산 (○○○)	☐ 정법궁 철거 후 대웅보전 건립(변경허가)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11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77.76㎡(면적동일) - 구조 : 목조 - 지붕 : 팔작지붕 - 규모/높이 : 지상1층/9.705m(기존 9.54m) - 변경사항 · 높이변경 : 증0.165m · 기둥두께 변경 · 건물위치 이동 * '19년 제13차 문화재위원회 :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0.0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32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경북 청도 (○○○)	☐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양성화 ○ 위치 :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 383번지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0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47㎡ - 건축(연)면적 : 98.43㎡ - 높이 : 5.4m - 구조 : 강파이프구조	원안가결	‘20.10.05															
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경기 안성 (○○○)	☐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재심의) ○ 위치 :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6번지 * 보호구역 및 1구역 내 ※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17.11.16.) : 원안가결 (허가기간 : ‘17.11.27.~’19.11.27.)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665m(변경없음) <table><tr><th>구분</th><th>허가사항 (‘17년 7월)</th><th>금차</th></tr><tr><td>포장공</td><td><아스콘포장> 폭9m구간 100m 폭7m구간 565m</td><td>변동없음</td></tr><tr><td>토공</td><td>흙깎기 2,200㎡ 흙쌓기 800㎡</td><td>흙깎기 3,000㎡ 흙쌓기 955㎡</td></tr><tr><td>배수공</td><td>L형측구 : 565m 산마루측구 : 150m 배수관(D800) : 15m 집수정(2개소)</td><td>L형측구 : 565m 산마루측구: 503m 배수관(D800) : 65m 집수정(5개소)</td></tr><tr><td>구조 물공</td><td>식생옹벽블록(400㎡), L형옹벽(H=1.2m, L=30m), 암거(5m*2m, L=16m) 암거(5m*2m, L=10m) 등</td><td>자연석쌓기(639㎡), L형옹벽(H=1.2m, L=30m), 암거(5m*2m, L=16m) 등</td></tr></table>	구분	허가사항 (‘17년 7월)	금차	포장공	<아스콘포장> 폭9m구간 100m 폭7m구간 565m	변동없음	토공	흙깎기 2,200㎡ 흙쌓기 800㎡	흙깎기 3,000㎡ 흙쌓기 955㎡	배수공	L형측구 : 565m 산마루측구 : 150m 배수관(D800) : 15m 집수정(2개소)	L형측구 : 565m 산마루측구: 503m 배수관(D800) : 65m 집수정(5개소)	구조 물공	식생옹벽블록(400㎡), L형옹벽(H=1.2m, L=30m), 암거(5m*2m, L=16m) 암거(5m*2m, L=10m) 등	자연석쌓기(639㎡), L형옹벽(H=1.2m, L=30m), 암거(5m*2m, L=16m) 등	조건부가결 (범면부 보강 및 경관 보호대책 수립)	‘20.09.24
구분	허가사항 (‘17년 7월)	금차																	
포장공	<아스콘포장> 폭9m구간 100m 폭7m구간 565m	변동없음																	
토공	흙깎기 2,200㎡ 흙쌓기 800㎡	흙깎기 3,000㎡ 흙쌓기 955㎡																	
배수공	L형측구 : 565m 산마루측구 : 150m 배수관(D800) : 15m 집수정(2개소)	L형측구 : 565m 산마루측구: 503m 배수관(D800) : 65m 집수정(5개소)																	
구조 물공	식생옹벽블록(400㎡), L형옹벽(H=1.2m, L=30m), 암거(5m*2m, L=16m) 암거(5m*2m, L=10m) 등	자연석쌓기(639㎡), L형옹벽(H=1.2m, L=30m), 암거(5m*2m, L=16m) 등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	전북 임실 (○○○)	☐ 농막(1동) 설치(2차) ○ 위치 :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229번지 * 제1구역(문화재에서 210m 이격) ○ 사업내용: 농막(1동) 설치 - 대지면적 : 2,624㎡ - 농막면적 : 19.84㎡(6.2m*3.2m) - 재질 : 철골프레임(컨테이너) ※변경사항 : 컨테이너 내부 주방(싱크대 설치) 시설 제외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연장 신고시 문화재 보호법 관련 재허가를 득할 것.)	'20.09.24
보물 제614호 사천 홍사리 매항비	경남 사천 (○○○)	☐ 양봉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 ○ 위치 :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 산45-17 * 제2구역(문화재에서 200m 이격) ○ 사업내용 - 양봉시설 5동 신축 · 대지면적 : 4,577㎡ · 건축면적/연면적 : 1,162.8㎡ · 최고높이 : 4.7m(1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부지조성 · 진입도로 개설 : 421㎡ · 토공 : 흙깎기 3,936㎡, 흙쌓기 5,169㎡, 터파기 75.8㎡, 되메우기 39.1㎡, 순성토 1,208㎡, 법면보호공 1,233㎡ · 구조물공(전석쌓기) : L=145.3m, A=361.2㎡, H=3.1m · 배수공 : 플룸관 460m, pe배수관 16m, 산마루측구 125.5m, 집수정 3개소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395.5㎡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 절·성토량 과다)	'20.09.24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